

발 간 등 록 번 호

54-6280000-100149-10

시민의 바람,
인천의 새바람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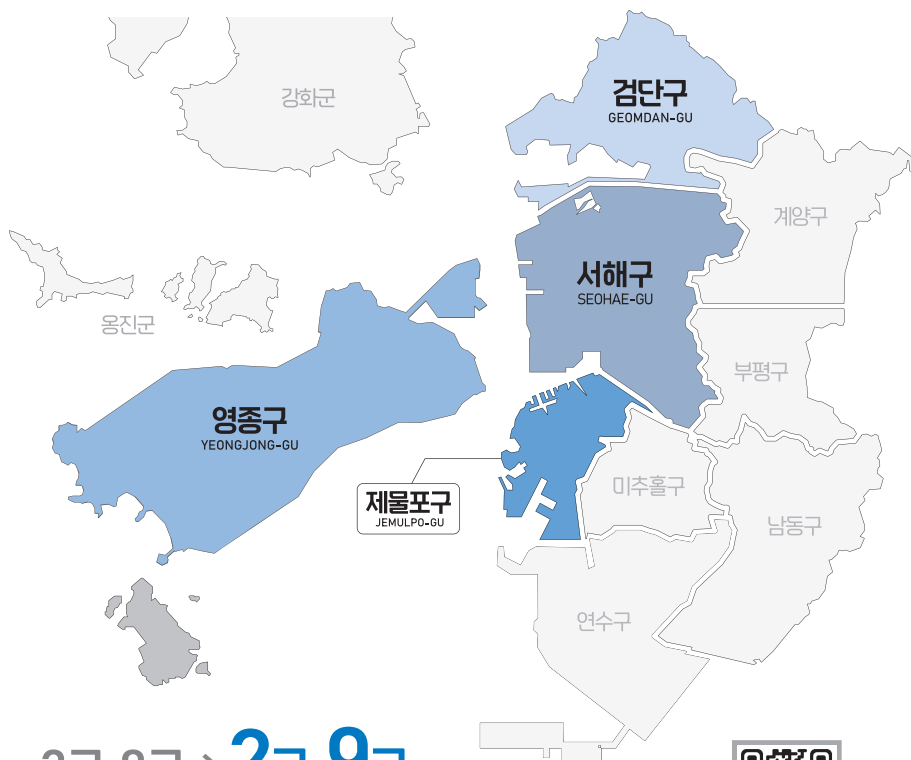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 출범!

31년 만에 달라지는 행정지도, 새로운 인천이 열립니다!



2군·8구 → **2군·9구**

중구·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서구 → 서해구·검단구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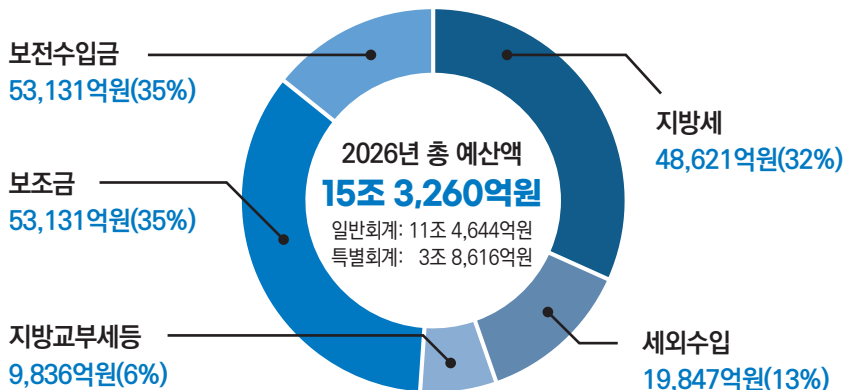


지방세 안내 및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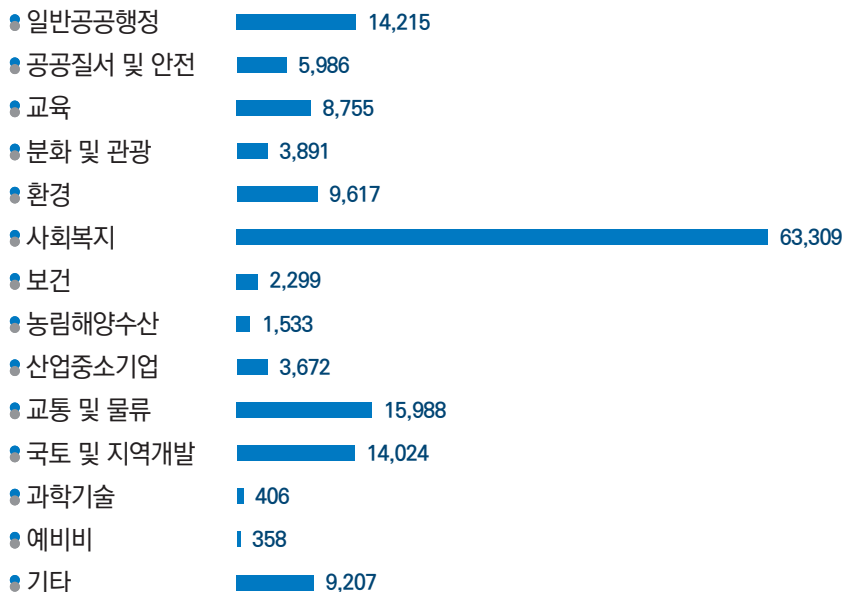
구 분	우편번호	주 소	대표번호
인천시청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440-2540(세정담당관) 440-2630(징수담당관)
강화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930-3041(세무회계과)
옹진군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옹현동)	899-2410(재무과)
제물포구	2255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송림동)	770-6270(세무과)
영종구	22397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중산동)	760-7230(세무1과) 760-7260(세무2과)
미추홀구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880-4630(세무1과) 880-7463(세무2과)
연수구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749-7451(송도세무과) 749-7461(세무과)
남동구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453-2360(세무1과) 453-2350(세무2과)
부평구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509-6230(세무1과) 509-8920(세무2과)
계양구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450-5221(세무1과) 450-5261(세무2과)
서해구	22726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07(심곡동)	560-4190(세무1과) 560-4210(세무2과)
검단구	22679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당하동)	726-6330(세무1과) 726-6370(세무2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살림 규모

1 세입 구성별 예산 현황



2 분야별 세출 배분 현황



인천광역시 지방세 주요 현황

1 지방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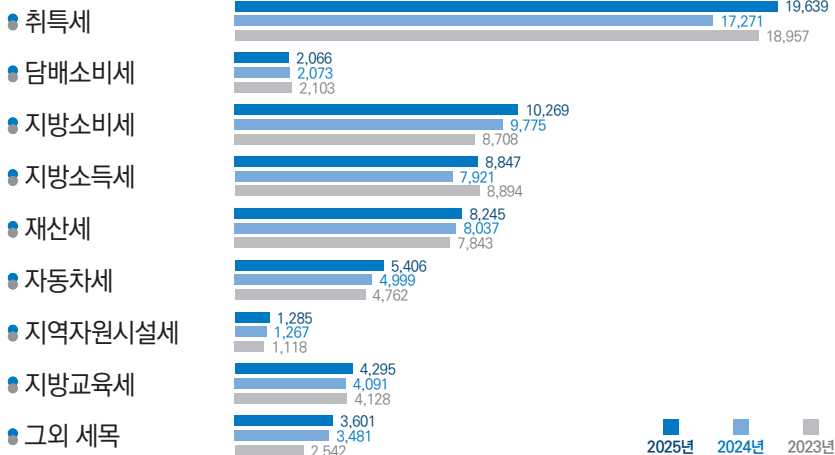
시 세				구 세				군 세			
보통세				보통세				보통세			
취 등 레 담 지 주 (지 자	록 배 방 개 방 동	득 면 저 소 소 민 인 소 차	허 비 비 분 득 세	지 방 교 육 세	등 지 주 (사 업 소 분, 재	면 소 민 종 업 원 분) 산	허 비 세 세 세 세	담 지 주 (지 재 자	배 방 전 방 동	소 소 민 세 소 산	비 비 세 목 득 세 세

2 분류별 세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비중	시 세	비중	구 세	비중	군 세	비중
2025년	63,653	100	51,564	81	11,310	17.8	779	1.2
2024년	58,915	100	47,173	80.1	10,997	18.7	745	1.2
2023년	59,055	100	47,793	80.9	10,544	17.9	718	1.2

3 주요세목별 징수 현황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I. 지방세 개요

1. 지방세 개념	13
2. 지방세 용어의 이해	14
3. 지방세 구조	17
4.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9
5.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20
6. 지방세 세율	21
7. 지방세 월별 일람표	22

II. 2026년 지방세 변경사항

1. 지방세관계법령 주요 개정내용	25
--------------------	----

III. 지방세 세목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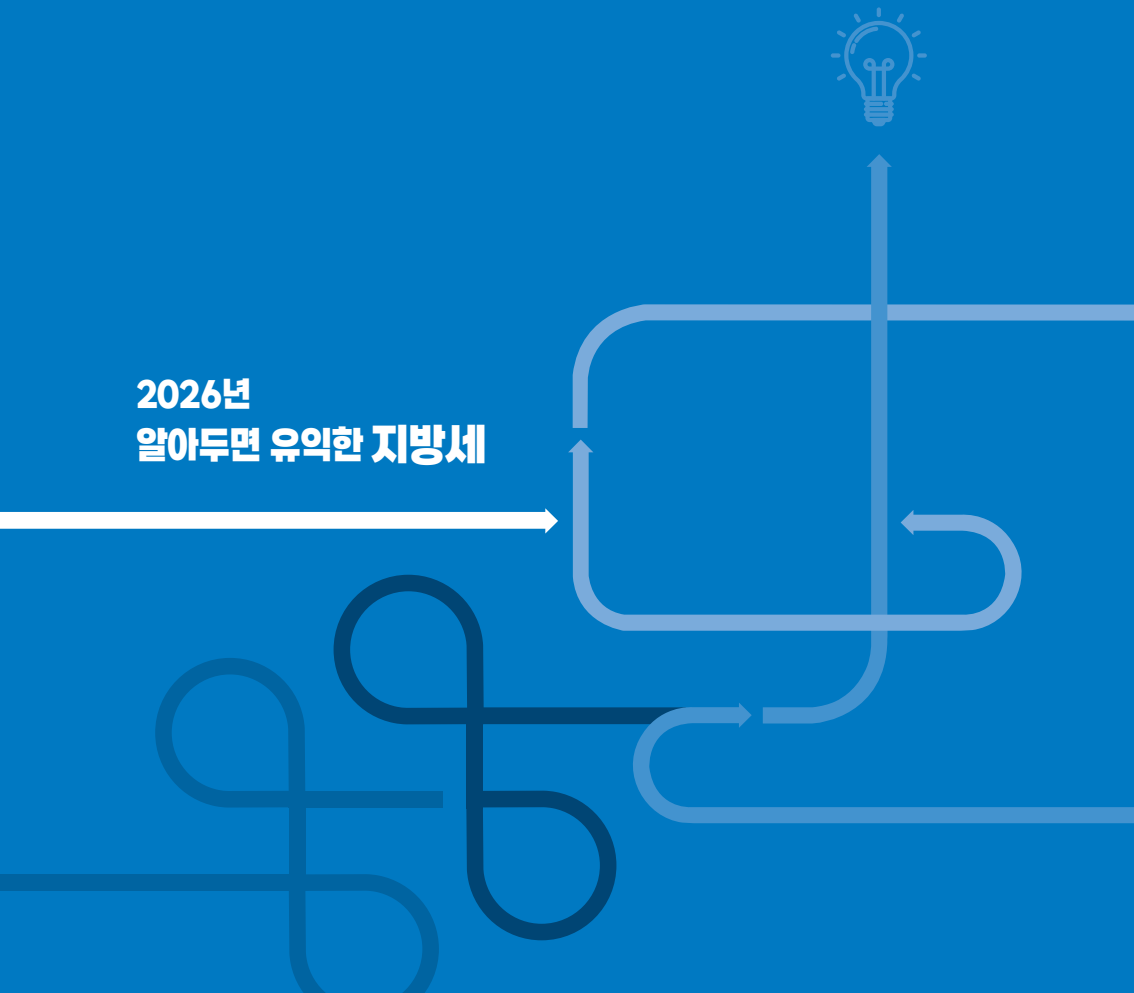
1. 취득세	33
2. 등록면허세	40
3. 레저세	41
4. 담배소비세	42
5. 지방소비세	43
6. 주민세	44
7. 지방소득세	45
8. 재산세	47
9. 자동차세	48
10. 지역자원시설세	50
11. 지방교육세	51

Contents

IV.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1.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55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57
	3. 조례에 따른 감면 등	76
	4. 2026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77
V.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1. 지방세 구제제도	81
	2. 납세자보호관 제도	84
	3.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91
	4. 마을세무사 제도	94
VI.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1. 지방세 납부방법	99
	2. 지방세 납부매체	102
	3.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혜택	104
	4. 디지털 지방세 홍보	105
VII. 기타 유용한 지방세 정보 등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	109
	2.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112
	3.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114
	4. 지방세 체납시 제재 내용	116
	5. 납세증명서의 제출	117
	6. 국세 전화상담 및 세무서 안내	119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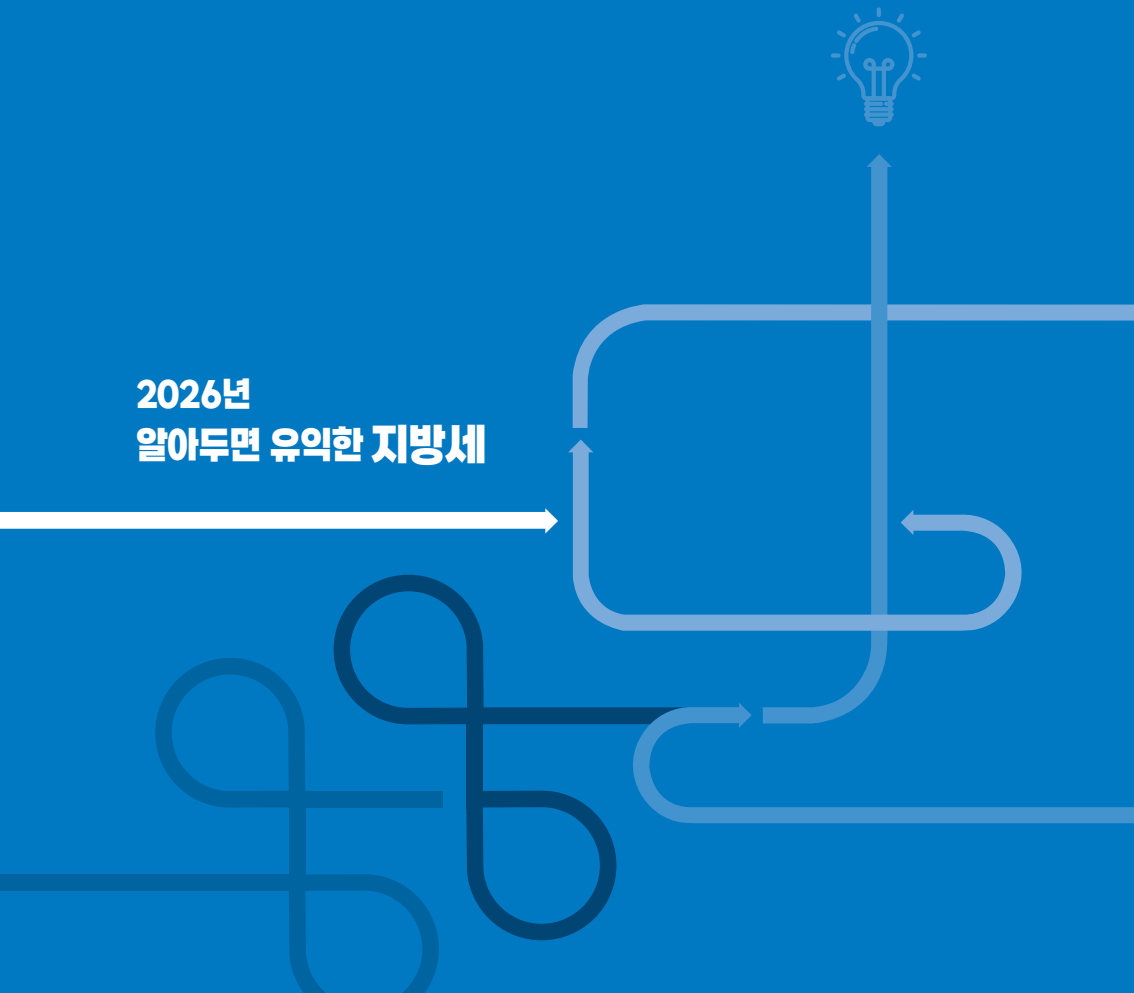
I

지방세 개요

1. 지방세 개념	13
2. 지방세 용어의 이해	14
3. 지방세 구조	17
4.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9
5.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20
6. 지방세 세율	21
7. 지방세 월별 일람표	22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1

지방세 개념



1 지방세 의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2 법적 근거

- 「헌법」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헌법」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 관계법임

02

지방세 용어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함)를 말합니다.

●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 · 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합니다.

● 과세물건

-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 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합니다.

● 세 율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금액입니다.

☞ 납부세액의 산출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특별징수

-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 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가산세의 종류

구 분		가 산 세	
신고	무신고가산세	단순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사기·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단순 무신고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사기·부정 무신고	과소신고분 세액의 40%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부과 고지 전	1일 0.022%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舊 가산금)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舊 증가산금, 60개월)
그외	취득세	무신고 매각 가산세 (미등기 전매)	산출세액의 80%
	레저세	장부 비치의 의무 불이행	산출세액의 10%
	담배소비세	기장 의무 불이행 등	산출세액의 10%
		담배소비세 탈루 행위	산출세액의 30%

* '24년부터 종전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가산세의 감면

구 분	신 고 시 기	감면율	가산세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90%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 3개월 이내	75%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1년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1년 6개월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2년 이내	10%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50%	무신고
	법정신고기한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	20%	
그 외의 사유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지연통지	50%	납부지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한 내	50%	신고·납부
	천재지변 등	면제	신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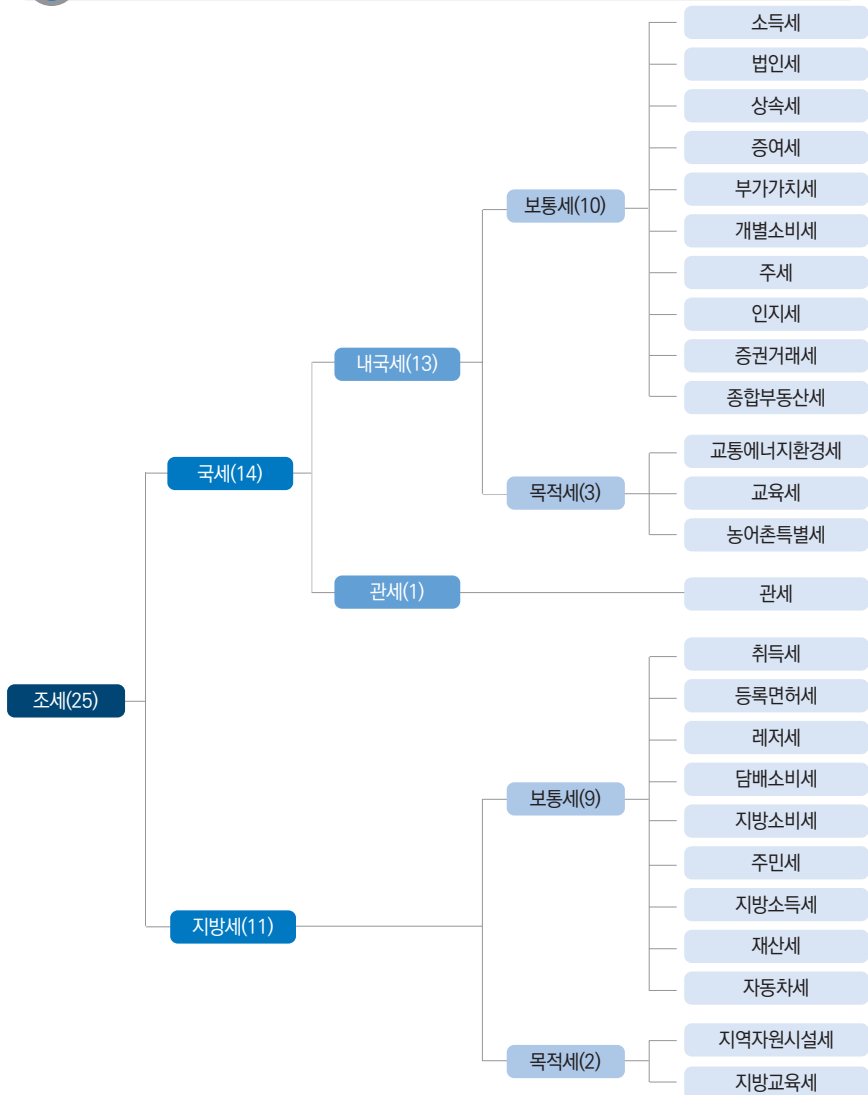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제외

03

지방세 구조



1 국세 및 지방세 분류



2

지방세의 분류

세 목			도	특별시	광역시(구)	광역시(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록면허세	등록분		도세	자치구세	자치구세	시 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면허분							
취득세				시세	시 세	군 세		
레저세					시 세 자치구세			
지방소비세					시 세	군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시세 군세					시 세
	소유분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분	50%			자치구세			
		50%						

※ 보통세(9개) : 등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목적세(2개)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소비세 : 도세 ·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일부가 시 · 군 · 구세임

04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 록 면허세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면허분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1월)의 1일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 하는 때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개인분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자동차세	소유분		납기가 있는 달(6월 · 12월)의 1일
	주행분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 출항하는 때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
	소방분	주택 · 건축물 · 선박	과세기준일(6월 1일)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분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05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 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 · 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외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등록분 :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 면허분(수시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보통징수	· 면허분(정기분) : 1.16.~1.31.
레 저 세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다음 달 20일까지 · 입국자 휴대품 및 외국 탁송품 : 세관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 세관장이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1기] (예정)4.1.~25./ (확정)7.1.~25. [2기] (예정)10.1.~25./ (확정)다음연도1.1.~25. · 납입관리자가 시 · 도별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 · 도에 납입
주 민 세	신고납부	· 사업소분 : 8.1.~8.31.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징수	· 개인분 : 8.16.~8.31.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 · 퇴직소득분 : (확정) 5.1.~5.31. └ 양도소득분 : 「소득세법」의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 산 세	보통징수	· 주택(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분 : 7.16.~7.31. · 주택(1/2) · 토지분 : 9.16.~9.30. ※ 주택분 7월에 전액고지 ┌ 강화군 : 산출세액 20만원 이하 ┌ 남동구, 서해구, 검단구 : 산출세액 10만원 이하 └ 옹진군 : 산출세액 5만원 이하
자 동 차 세	보통징수	· 제1기분 : 6.16.~6.30. · 제2기분 : 12.16.~12.31.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 역 자 원 시 설 세	신고납부	· 특정자원 · 특정시설분 : 다음 달 10일까지(폐기물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지하수의 경우 분기별 말일 보통징수)
	보통징수	· 소방분 : [주택(1/2) · 건축물 · 선박] 7.16.~7.31. / [주택(1/2)] 9.16.~9.30.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취득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시
	보통징수	· 주민세(개인분) · 재산세 ·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수 시 부 과	보통징수	· 수시부와 납세고지서의 납기까지(일반적으로 납세고지 받은 달의 말일) - 신고 후 미납부 및 무신고 · 과소신고에 대한 수시부와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와

06

지방세 세율



세 목		과 세 대 상	세 율
취 득 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중과세율 : 4.0%, 8.0%, 12.0% 등
등록 면허세	등록분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소유권(0.02%), 설정(0.2%), 기타(1만5천원/건)
		차량의 등록	소유권(5%, 2%), 설정(0.2%), 기타(1만5천원/건)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1%), 설정(0.2%), 기타(1만원/건)
	면허분	법인등기	영리(0.4%), 비영리(0.2%), 기타(11만2천5백원·4만2백원/건)
레저세		승차(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발매액의 10%
담배소비세		담배사업법 상 담배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결련담배 1갑(20개비)당 1,007원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5.3%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주민세	개인분	개인(세대주)	10,000원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50,000~75,000원)+330㎡초과시250원/㎡] 법인[(50,000~300,000원)+330㎡초과시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종업원분	급여액
지방 소득세	개인지방 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0.6% ~ 4.5%
		양도소득	0.6% ~ 7.0%
		특별징수	원천징수액의 10%
	법인지방 소득세	법인소득 특별징수	1.0% ~ 2.5% 원천징수액의 10%
재산세	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종합) 0.2~0.5%, (별도) 0.2~0.4% (분리) 전, 담,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그 밖의 토지 : 0.2% 건축물 0.25%, 선박 (일반) 0.3%, (고급) 5%, 항공기 : 0.3%
		주택	주택 0.1~0.4%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세율특례 : 0.05%~0.35% ('21~'26)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0.14%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자동차	영업용 18~24원/cc, 비영업용 80~200원/cc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지역자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발전용수 2원/10㎡, 지하수 20~200원/㎡, 지하자원 0.5%
시설세	특정시설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폐기물	원자력발전 1원/kwh, 화력발전 0.6~0.7원/kwh 폐기물 6천원/톤
		소방분	주택, 건축물, 선박
지방 교육세	취득세액(중전 등록세분 세액)의 20%, 등록면허세액(등록분)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액(개인분·사업소분)의 25%(군지역은 10%), 재산세액(도시지역분제외)의 20%, 자동차세액의 30%		

07

지방세 월별 일람표



월별	지방세		국세
	광역시세	군·구 세	
1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31.한) ※ (군세) 강화군,옹진군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1.31.한) (※군의 경우 시세)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5.한)
3월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3.31.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31.한)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30.한) ※ (군세) 강화군,옹진군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25.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납부 (5.31.한) ※ (군세) 강화군,옹진군		종합·퇴직·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한)
6월	- 자동차세(소유분)(1기분) 납기(6.30.한)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6.30.한)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30.한)
7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31.한) ※ (군세) 강화군,옹진군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확정신고납부 (7.31.한) ※ (군세) 강화군,옹진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주택(1/2)·건축물·선박] 납기(7.31.한)	재산세(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납기(7.31.한)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25.한)
8월	주민세(개인분) 납기(8.31.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8.31.한)	
9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한)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주택(1/2)] 납기(9.30.한)	재산세(주택(1/2)·토지분) 납기 (9.30.한)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30.한)
10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0.31.한) ※ (군세) 강화군,옹진군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한)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한)
12월	- 자동차세(소유분)(2기분) 납기(12.31.한)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분할납부(12.31.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31.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 (12.15.한)
연중 (매월)	- 레저세 : 매월 10일한 - 담배소비세 : 매월 20일한 - 지방소비세 : 매월 25일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매월 10일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특정시설분) : 매월 10일한(폐기물의 경우 말일한) (지하수의 경우 분기별 다음달 말일한) - 자동차세(주행분) : 매월 말일한	주민세(중업원분) : 매월 10일한	- 교통·에너지·환경세 (매월 말일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매월 10일한)
수시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 : 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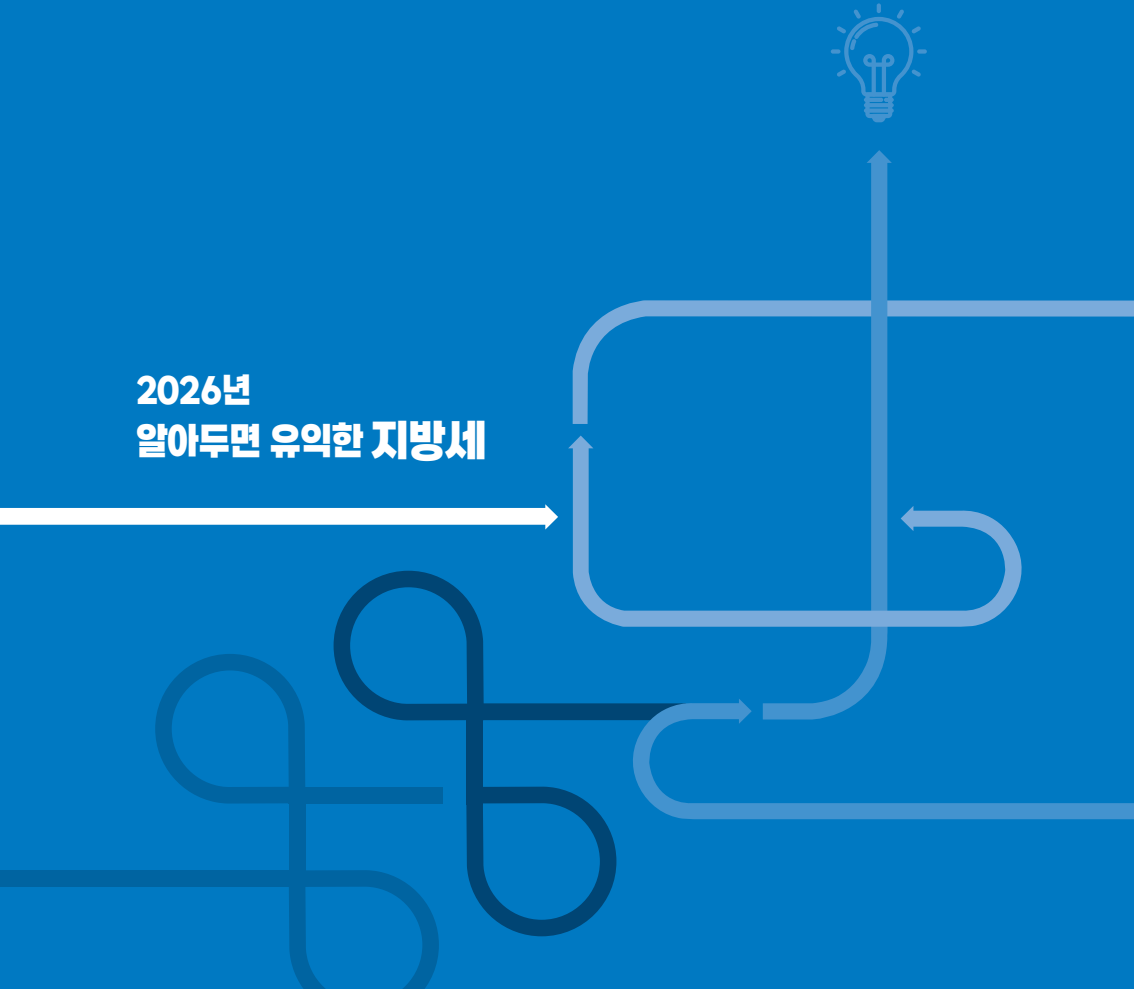
2026년 지방세 변경사항

1. 지방세관계법령 주요 개정내용

25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법§42②)	○ 국세와 동일하게 ①, ② 경우에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하여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는 경우 ②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 (법§83①)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으로 사전통지 기간 축소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법§86⑦, 법§108-2)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과세 정보 관리 조치 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 세무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징수
④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권한 추가 (영§51-2 ①·②)	○ 납세자 권리구제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업무 및 권한 확대 -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심사 과정에 자발적 참여·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권한 추가
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 (영§62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 (법 §40, §41)	○ (조문체계 통일) 타법과 일치하게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압류금지 재산으로 일원화 ○ (대상 신설) 신체 보조기구,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물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경형자동차를 압류금지 재산 범위에 추가

●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취득세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거래 시 증여의제 (법 §7① · §10의3②)	○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을 유상거래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 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 ○ 유상세율 적용 배제 기준을 지급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으로 함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②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법§13⑤)	○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
	③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개선(법 §13⑤)	○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 부대시설 설치 요건을 삭제
	④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판단기준 개선(영§14의2)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단 시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 -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 산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속토지만 취득하더라도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
	⑤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신설 (영§28의2 18호 신설 등)	○ 인구감소지역 내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인 등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 및 주택 수 제외 신설 - 등록임대사업자가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여 60일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제외 - 중과세 제외 주택의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담배소비세	⑥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법§52①)	○ 합성니코틴 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 - 담배소비세 세율 규정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년간 50% 감면하는 규정 신설
	⑦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개편(영§71)	○ 유사한 성격의 지방세(주행보 자동차세) 및 담배에 붙는 다른 제세부담금 (개별소비세, 관 · 부가세, 건강부담금) 과의 운영 불일치로 납세자 혼란 우려 -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납세담보 면제
주민세	⑧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 (영§78의2)	○ 출산전후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신 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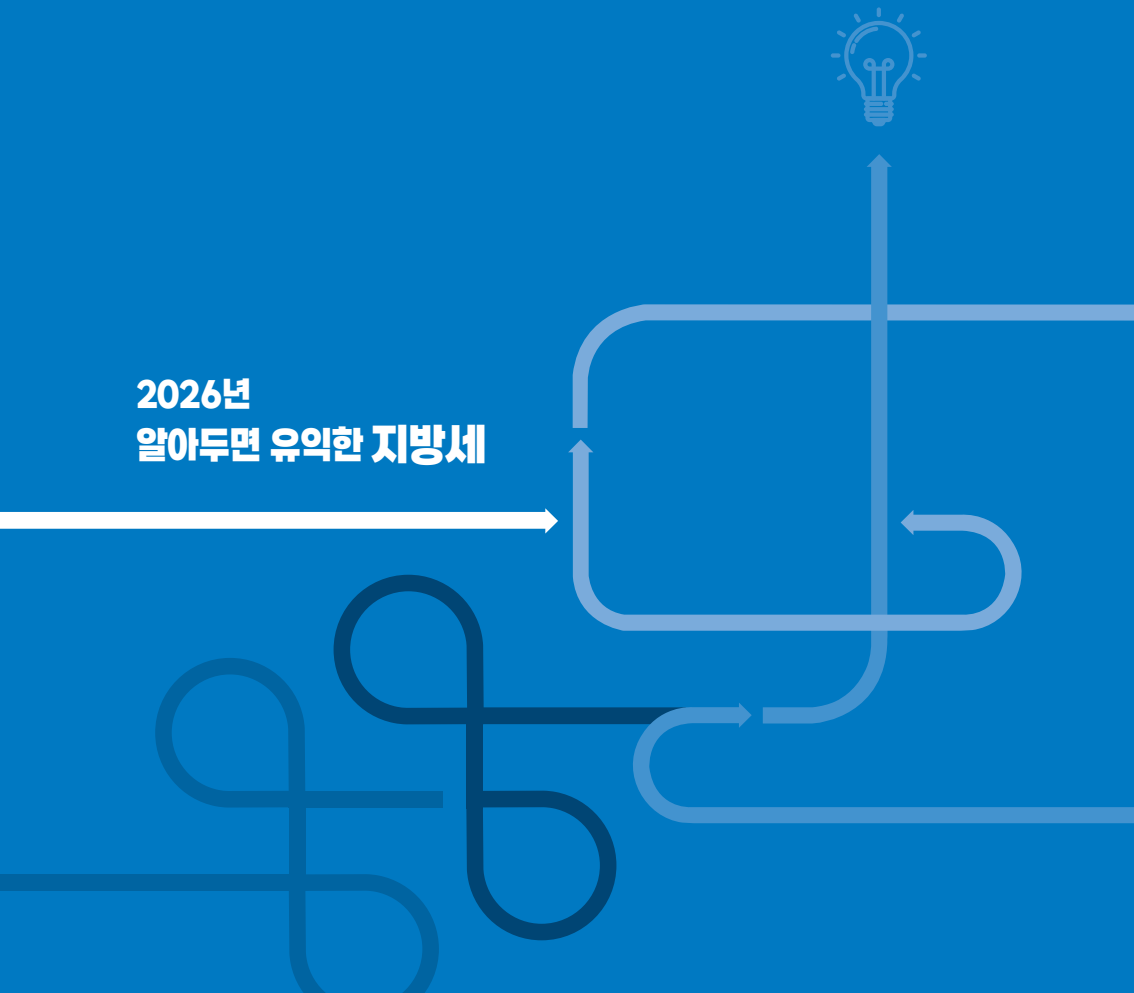
제목		주요 내용
지방소득세	⑨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법§103의19)	○ 국세(소득세)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과 동일하게 변경함에 따라, - 지방소득세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설
	⑩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법§103의20①)	○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 상향)함에 따라, - 국세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국세의 10% 수준) 상향 조정
재산세	⑪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법§107②, 영§106)	○ 조합원들(위탁자)이 납부한 금전으로 조합(수탁자)이 매입한 부동산 (금전신탁)의 경우 지역·직장주택조합 외 다른 조합도 조합(수탁자)을 납세의무자로 규정 -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조합(수탁자)에 이전하는 경우 (현물신탁)는 현행대로 원 소유자인 조합원(위탁자)에게 부과
	⑫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법§112)	○ 도시·군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 손실(재산권 제한)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감면(지특법 §84②)과 동일하게 미집행 규정 신설 -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은 실시 계획의 인가(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포함) 전까지만 비과세 적용 -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도시정비법§20①)을 참고하여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제외 ○ 개별법률(예: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의제된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
	⑬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확대 (영§103의2)	○ 사실상 건축물 등이 철거·멸실된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 1년으로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⑭ 매립폐기물에 대한 특정시설분 신규 과세 (법§142 등)	○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 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규로 과세
	⑮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료별 차등 세율 적용 (법§146②제3호)	○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소에 이용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 -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현행 세율(0.6원/kWh)을 유지하되, 유연탄 등 이용 시 세율을 0.1원 인상(0.6 → 0.7원/kWh)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생애최초 주택 상시 거주 추징요건 완화 등 (법 §36의3)	○ (상시 거주)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중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하는 것으로 상시거주 추징요건 완화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限) ○ (추가 주택 취득 제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추징되지 않도록 추징 폐지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을 취득('24~'25년)하여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 유지 일몰 종료																							
②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법 §47의4)	○ 「소방시설법」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 설치 유인을 통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감면 신설 - 스프링클러 설치 非의무대상 숙박시설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하여 취득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2년간, 이후 3년간 50%)																							
③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법 §58의2①,②)	○ 도시 내 산업입지 고도화 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감면을 3년 연장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해 지역별 감면을 차등 (취: 취득세, 재:재산세) <table><tr><th>개정 전</th><th>→</th><th colspan="3">개정후</th></tr><tr><td>취 35% 재 35%</td><td></td><td>수도권</td><td>취 15%, 재 15%</td><td>축소</td></tr><tr><td></td><td></td><td>비수도권</td><td>취 35%, 재 35%</td><td>-</td></tr></table>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을 적용	개정 전	→	개정후			취 35% 재 35%		수도권	취 15%, 재 15%	축소			비수도권	취 35%, 재 35%	-								
개정 전	→	개정후																						
취 35% 재 35%		수도권	취 15%, 재 15%	축소																				
		비수도권	취 35%, 재 35%	-																				
④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법 §71①,②)	○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면을 3년 연장하고, -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및 인구감소지역별로 감면을 차등을 두어 재설계 (취: 취득세, 재:재산세)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개정전</th><th>→</th><th>개정후</th></tr><tr><td rowspan="3">사업 시행자</td><td>수도권</td><td rowspan="3">취 35%, 재 25%</td><td rowspan="3">→</td><td>취 25% 재 15%</td></tr><tr><td>비수도권</td><td>취 35% 재 25%</td></tr><tr><td>인구감소지역</td><td>취 50% 재 35%</td></tr><tr><td rowspan="3">입주 기업</td><td>수도권</td><td rowspan="3">취 50%, 재 35%(5년)</td><td rowspan="3">→</td><td>취 35% 재 25%(5년)</td></tr><tr><td>비수도권</td><td>취 50% 재 35%(5년)</td></tr><tr><td>인구감소지역</td><td>취 75% 재 50%(5년)</td></tr></table>	구 분		개정전	→	개정후	사업 시행자	수도권	취 35%, 재 25%	→	취 2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25%	인구감소지역	취 50% 재 35%	입주 기업	수도권	취 50%, 재 35%(5년)	→	취 35% 재 2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 75% 재 50%(5년)
구 분		개정전	→	개정후																				
사업 시행자	수도권	취 35%, 재 25%	→	취 2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25%																				
	인구감소지역			취 50% 재 35%																				
입주 기업	수도권	취 50%, 재 35%(5년)	→	취 35% 재 2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 75% 재 50%(5년)																				

제목	주요 내용																															
⑤ 빈집 정비를 위한 감면 신설 (법 §75의6)	○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감면(5년간) - 다만, 철거 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에 근거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 감면 제외																															
⑥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78)	○ 산업단지의 지역 고용 창출 기여, 개별 공장의 사회문제 차단 등을 고려 산업단지 관련 감면을 3년 연장 - 국가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지역을 위주로 산업단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감면을 재설계 - 시행자의 분양·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무기한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분양·임대용 토지 및 직접사용 부동산과 같이 5년간 감면 기한 설정 감면 형평성 도모 (취: 취득세, 재:재산세)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개정전</th><th>→</th><th>개정후</th></tr><tr><td rowspan="3">사업 시행자</td><td>수도권</td><td>취 35%, 재 35%</td><td></td><td>취 15%, 재 15%</td></tr><tr><td>비수도권</td><td></td><td></td><td>취 35%, 재 50%</td></tr><tr><td>인구감소지역</td><td>취 35%, 재 60%</td><td></td><td>취 50%, 재 60%</td></tr><tr><td rowspan="3">입주 기업</td><td>수도권</td><td>취 50%, 재 35%(5년)</td><td></td><td>취 35%*, 재 35%(5년)</td></tr><tr><td>비수도권</td><td></td><td></td><td>취 50%, 재 60%(5년)</td></tr><tr><td>인구감소지역</td><td>취 35%, 재 75%(5년)</td><td></td><td>취 75%, 재 75%(5년)</td></tr></table> *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개정 전에는 수도권 지역에 해당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25% 추가감면(대수선 +15%)	구 분		개정전	→	개정후	사업 시행자	수도권	취 35%, 재 35%		취 1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50%	인구감소지역	취 35%, 재 60%		취 50%, 재 60%	입주 기업	수도권	취 50%, 재 35%(5년)		취 35%*, 재 3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60%(5년)	인구감소지역	취 35%, 재 75%(5년)		취 75%, 재 75%(5년)
구 분		개정전	→	개정후																												
사업 시행자	수도권	취 35%, 재 35%		취 1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50%																												
	인구감소지역	취 35%, 재 60%		취 50%, 재 60%																												
입주 기업	수도권	취 50%, 재 35%(5년)		취 35%*, 재 3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60%(5년)																												
	인구감소지역	취 35%, 재 75%(5년)		취 75%, 재 75%(5년)																												
⑦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 (법 §2, §185, 영 §128)	○ 감면 요건을 갖춘 위탁자가 부동산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인 수탁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 적용 - (감면 적용 특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조성 및 건축한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감면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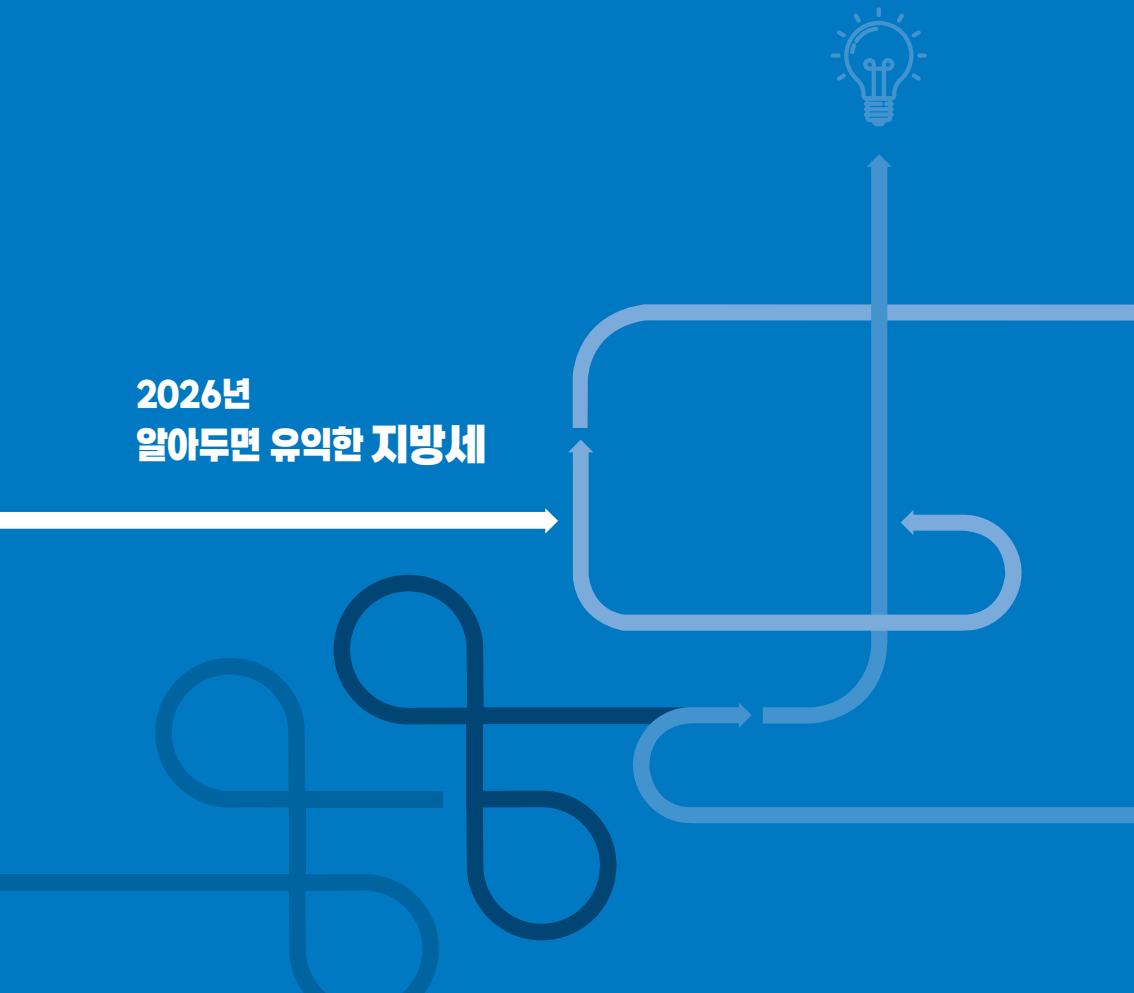
III

지방세 세목별 개요

1. 취득세	33
2. 등록면허세	40
3. 레저세	41
4. 담배소비세	42
5. 지방소비세	43
6. 주민세	44
7. 지방소득세	45
8. 재산세	47
9. 자동차세	48
10. 지역자원시설세	50
11. 지방교육세	51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1

취득세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납세의무자 및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등)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 4% ○ 주택 유상거래 취득 : 1~3% - 6억이하 1% / 6억초과~9억이하 1~3% / 9억초과 3% ※ 주택 유상거래 중과 ┌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 8% └ 법인,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4주택 이상 : 12% ○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내 법인 · 공장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 : 표준세율+4% / 대도시 : (표준세율×3)-4% ○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중과 : 표준세율+8% ※ 물건별 · 유형별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 · 등록일 중 빠른 날 ○ 무상취득 : 증여계약일 또는 상속(유증)개시일 ○ 건축물 건축 · 개수 :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신고납부시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기권리증 등 ○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 ○ 토지 · 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납기	○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 · 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외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참고 1

취득세 세율표 (표준세율, 종과세율)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상속취득		농지	2.3%	
			농지 외	2.8%	
	상속 외 무상취득		일반	3.5%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2.3%	
	합유 · 총유물의 분할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	
			농지 외	4.0%	
주택 유상거래 취득(일반)			1~3%		
기 타	선박	등기 · 등록대상 선박 (소형선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 · 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0%
		소형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포함)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경자동차 이외	7.0%
		이륜자동차			2.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경자동차 이외	5.0%
			영업용	4.0%	
		위 외의 자동차(미등록대상 차량 등)			2.0%
	기계장비	기계장비			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
		그 밖의 항공기		최대이륙 중량 5,700kg 미만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입목				2.0%
	광업 · 어업 · 양식업권				2.0%
	골프 · 승마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이용 · 요트회원권				2.0%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세율) 참조

● 중과세율

구 분		세 율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1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용 신 · 증축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①-2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 유치지역 · 공업지역 제외)에서의 공장 신 · 증설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4%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중과
	②-1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 전입 ·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②-2 대도시(유치지역 · 공업지역 제외)에서의 공장 신 ·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4%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중과
	③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8%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3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3)+4%
	⑥ ①과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3)+4%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법인 ㉡ 1세대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3주택(비조정대상지역) ㉢ 1세대3주택(조정대상지역) 이상 또는 1세대4주택(비조정대상지역) 이상	㉠ 12% ㉡ 8% ㉢ 12%
	② 조정대상지역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무상취득	8%
	③ ① 또는 ②+고급주택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① 또는 ② 세율+8%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참조

● 세율의 특례

구 분		세 율
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1가구 1주택, 자경농지), 공유물의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별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표준세율 - 2%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과세
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 -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 · 차량 ·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수입취득,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 차량 취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 차량 취득, 택지공사 준공에 따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조성 · 설치에 따른 취득, 레저시설 등의 취득		2%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과세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참조

참고 2

취득세 과세대상

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②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지방세법」 제6조제7호), 총 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됨(「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그리고 원동기의 동력원이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또는 전기인지 등은 묻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와 다른 점임.

③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④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9호).

⑤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0호). 일반적으로 선박은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음.

⑥ 입목

지상의 과수, 입목과 죽목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1호).

⑦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2호).

⑧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3호).

⑨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3의2호).

⑩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4호).

⑪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5호).

⑫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6호).

⑬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7호).

⑭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8호).

참고 3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1. 화해조서·인낙조서(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2. 공정증서(사서증서를 포함 하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에 따른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1. 화해조서·인낙조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2. 공정증서(사서증서를 포함 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만 해당)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에 따른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된 경우만 해당)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봄.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사용승인서에는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시효에 따른 취득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	

02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등록분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납세의무자	등록분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면허분	- 각종 면허를 받는 자		
과세표준	등록분	- 등록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면허분	-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참조)		
세 율	등록분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0.80%
			소유권 이전 등기	2%
			유상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주택·해당 세율×0.5
			무상	1.5%(상속: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0.20%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0.20%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	0.02%
		차량 등록	소유권(비영업용 승용)	5%(경차:2%)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	1%
		법인 등기	법인설립	0.4%(비영리:0.2%)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면허분	종별	구 지역	군 지역
		1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9,000원
		5종	18,000원	4,500원
납 기	등록분	- 등기·등록관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등록 후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전입·지점설치 등 종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사업장 설치일 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면허분	- 신규 또는 변경의 경우(수시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정기분): 매년 1.16.~1.31.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발매행위를 대상으로 그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사업을 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부산시설공단 · 창원레포츠파크(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한국마사회(경마), 청도공영사업소(소싸움)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전국 시 · 군 · 구 안분 ※ 지방교육세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 경륜장 등(본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경우		
	구 분	경륜장 등 소재지 (본장) 관할 시 · 군 · 구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
	경륜장 등 직접발매	100% 신고납부	-
	장외 발매소	기 존	50% 신고납부
		신설(5년간)	80% 신고납부
	※ 본장 : 경륜(부산, 창원, 광명), 경정(하남), 경마(과천, 부산, 제주), 소싸움(청도)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경우(2022년 시행)		
	구 분	경륜장 등 소재지 (본장) 관할 시 · 군 · 구	각 시 · 군 · 구* (19세이상 인구기준 안분)
	기존	50% 신고납부	50% 신고납부
	신설(5년간)	80% 신고납부	20% 신고납부
	* 각 시 · 군 · 구 안분비율 = $\frac{\text{각 시 · 군 · 구의 19세 이상 인구}}{\text{전국 19세 이상 인구}}$		
납 기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04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 수입담배 등 담배를 대상으로 과세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

담배의정의	○ 「담배사업법」 상 담배 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입국자(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자 ○ 기타 제조 및 국내반입자, 면세담배 부당 처분자 등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 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ml)					
	피우는 담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제1종 쥘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쥘련		"	103원	
		제4종 각련		"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연초 및 연초	쥘련형 : 20개비당	897원
				고형물 사용	기타형 :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26원		
납 기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 반출신고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신고					
참 고	○ 담배에 붙는 각종 제세공과금					
	*판매가 4,500원 기준					
	구분		쥘련(일반담배)	쥘련형 전자담배		
	① 조세 및 부담금 계		3,318원(73.7%)	3,004원(66.8%)		
	담배소비세		1,007원(22.4%)	897원(19.9%)		
	지방교육세		443원(9.8%)	395원(8.8%)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18.7%)	750원(16.7%)		
	폐기물부담금		24원(0.5%)	24원(0.5%)		
	개별소비세		594원(13.2%)	529원(11.8%)		
	부가가치세		409원(9.1%)	409원(9.1%)		
	② 원가 및 이윤 등		1,182원(26.3%)	1,496원(33.2%)		

III. 지방세 세목별 개요

 지방소비세 징수업무 흐름



06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개인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 법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80백만원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세율	개인분	- 10,000원 ※ 지방교육세 구지역 25%, 군지역 10%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50,000~75,000원) + 330㎡초과시 1㎡당 250원 - 법인사업자 : (50,000~300,000원) + 330㎡초과시 1㎡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당 500원, 지방교육세 구지역 25%, 군지역 10% ※ 군·구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납기	개인분	- 매년 8. 16 ~ 8. 31. (정 기 분)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 익월 10일 이내 (신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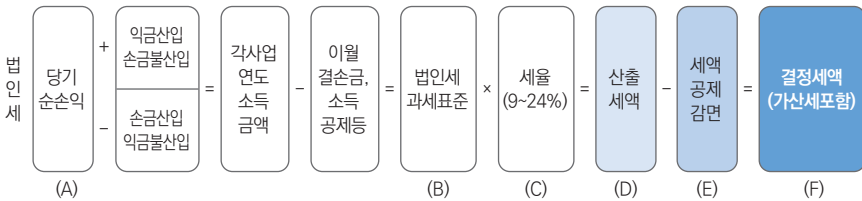
지방소득세는 2013년 소득까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 소득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내국인 및 내국법인은 국내 · 외 소득 모두 과세, 외국인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과세대상	개인	-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납세지	개인	- 근무지(근로 · 퇴직소득), 주소지(사업 · 연금 · 양도소득 등)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국 모든 시 · 군 · 구청에서 신고 가능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세 율	개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 소득	~ 1천400만원	과세표준의1천분의 6
			~ 5천만원	8만4천원+(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8천800만원	62만4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1억5천만원	153만6천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3억원	370만6천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5억원	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10억원	1천740만6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초과	3천840만6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퇴직 소득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기본세율 × 근속연수/12
		양도 소득	양도소득과세표준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0.6%~7.0%)
		특별 징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법인	법인 소득	~ 2억원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00억원	2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3천억원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양도 소득 과세 특례	3천억원초과	65억5천8백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 징수	특별 징수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납기	개인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 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신고 · 납부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법인	사업연도소득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 · 납부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
		청산소득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 · 납부
	특별 징수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자치구에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2013년도 귀속분까지(국세 부가세 형식) : 국세 결정세액(F) × 10% = 법인지방소득세

※ 2014년도 귀속분부터(독립세 전환) : 국세 과세표준(B) × 독립세율 - 공제 · 감면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1.0~2.5%)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성격의 군·구 독립세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 물건 소재지 관할 군·구 ○ 항공기 : 등록원부 상 정지장 소재지 관할 군·구(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주소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군·구(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토지(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60% ※ 단 1주택은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 (3단계 누진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 ※ 단력세율 :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 가감조정 ○ 주택 이외 건축물 : 0.25% (단일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0.05%~0.35%(‘21~’26, 6년) ○ 선박, 항공기 : 0.3% ※고급선박 : 5%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1.25% (5배 중과세율)
납기	○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세부담상한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5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110%, 6억원 초과 130%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액(징수액)으로 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0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1,000분의 1.4)은 조례로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09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소유분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주행분	- 휘발유 및 경유 등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납세의무자 * 정유사(5개사: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세율	소유분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승용자동차		배 기 량	cc당	배 기 량	cc당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초과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 합 자 동 차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 물 자 동 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kg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 수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		3,300원				18,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차령에 따라 경감률 적용 과세											
		3년 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주행분	- 휘발유 · 경유 등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26%(법정세율 36%) *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를 적용											

납기	소유분	- 정기분(연세액의 1/2) : 1기분(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12월 16일 ~ 12월 31일) -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 승계취득 및 비과세(과세)차량이 과세(비과세) 차량이 되는 경우, 영업용(비영업용)차량의 비영업용(영업용) 전환 시 일할 계산 • 이전·말소등록 시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주행분	- 정유업자 및 유류 수입자가 매월 반출한 유류에 대해 주행세를 산출하여 다음 달 말까지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 -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울산시장은 다음 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
참고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舊주행세) • 국가정책('98년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00년 신설 • * '99년 한미자동차협상 2,900억원, '01년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 2,000억원, 중고차감면제도 3,342억원, '03년 경차 취·등록세면제 200억원 및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를 인하 1,388억원으로 전국 합계 9,830억원 • '01년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포함	

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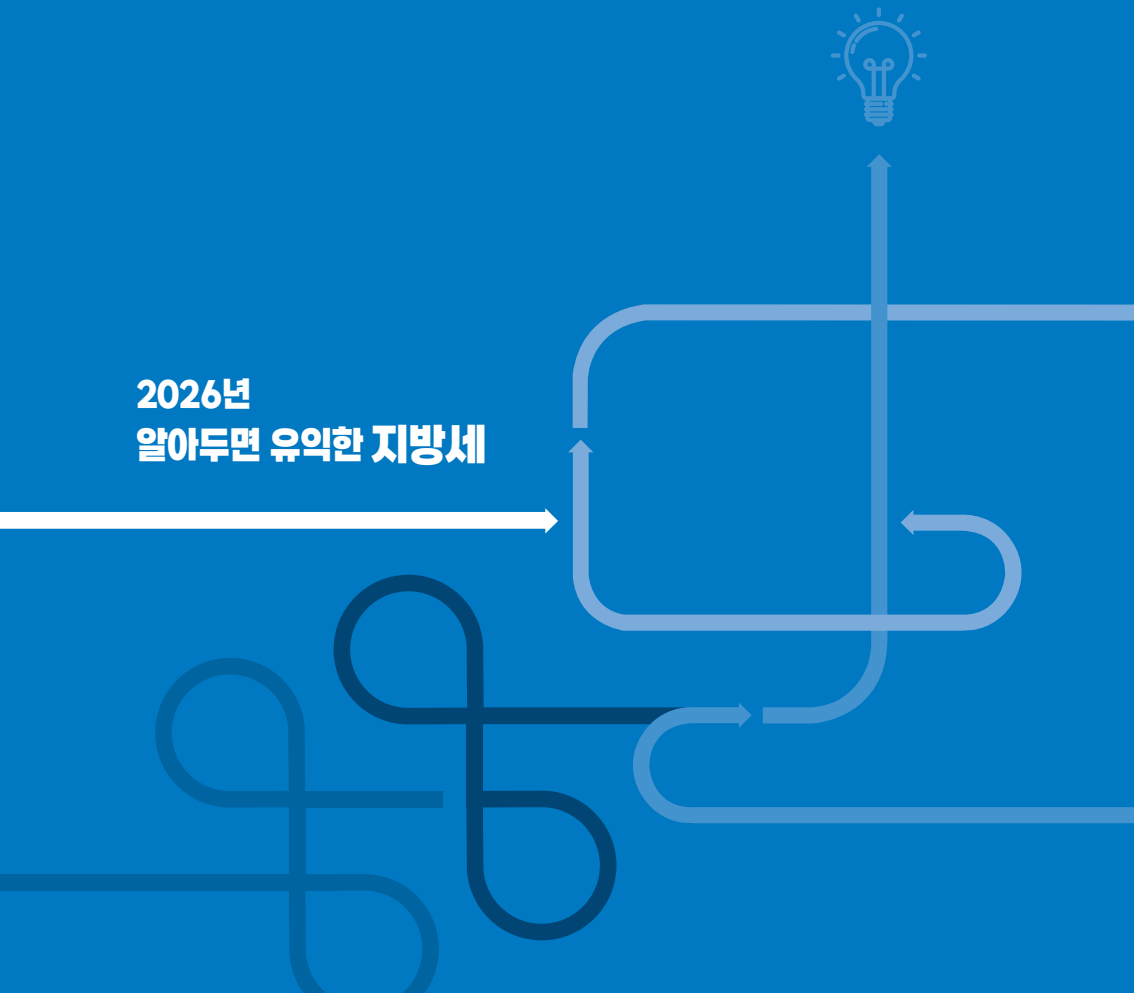
납세의무자	특정자원분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 시키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소방분	-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서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과세표준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 - 폐기물 :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소방분	- 소방시설에 충당 : 건축물 및 선박가액의 0.04~0.12%(6단계 누진세율) -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세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학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장례식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세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극장 제외), 백화점, 호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 의 건축물 등
납기	특정자원분	- 매월 말일까지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폐기물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특정시설분	- 다만, 지하수의 경우 분기별 다음달 16일 ~ 말일까지 보통징수
	소방분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1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20/100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20/100
	3	레저세액	40/100
	4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율로 한정) 세액	25/100(구) 10/100(군)
	6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20/100
납기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	30/100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는 때 ○ 보통징수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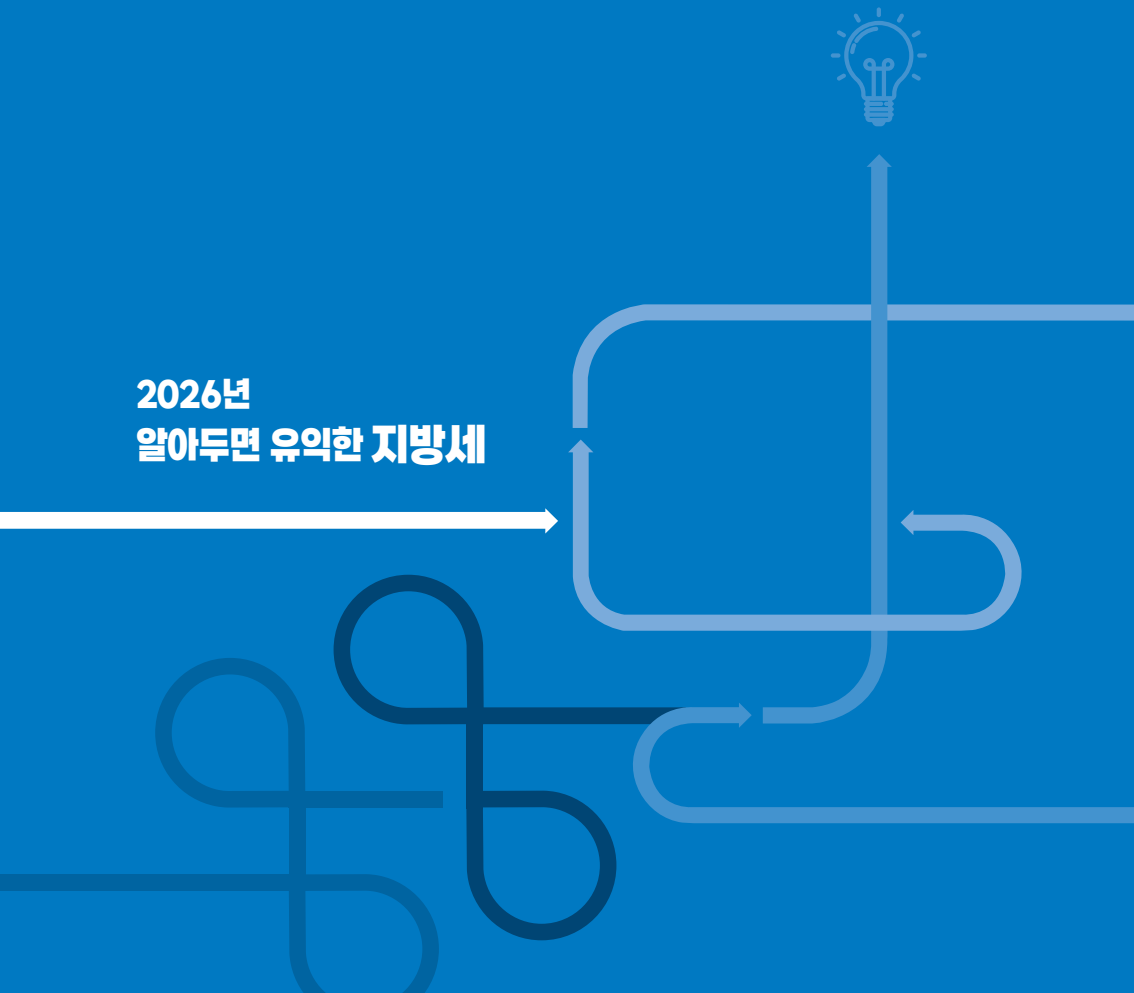
IV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1.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55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57
3. 조례에 따른 감면 등	76
4. 2026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77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세목	비과세 및 과세면제 내용	해당조문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9조①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취득 등	§9조②
	신탁재산의 취득(신탁등기 병행)	§9조③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9조④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취득	§9조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9조⑥
	상속개시 이전 사용할수 없는 차량 취득	§9조⑦
등록면허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26조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6조②1호
	행정구역의 변경 등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등록	§26조②2호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의 등록	§26조②3호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	§26조②4호
담배소비세	수출용 담배	§54조①1호
	주한외국군의 관할구역 내 판매용 담배	§54조①2호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 담배	§54조①3호
	외항선 등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담배	§54조①4호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용 담배	§54조①5호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	§54조①6호
	북한지역 취업근로자 및 관광객에 대한 판매용 담배	§54조①7호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반입하는 담배	§54조②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재수입되어 반출하는 담배	§54조③

세목	비과세 및 과세면제 내용	해당조문
주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75조① 1호, 2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75조 ① 3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75조 ① 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77조①1호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77조①2호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	§82조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8000만원 이하	§84조의4
지방소득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90조
재산세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109조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유료사용 제외)	§109조②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묘지	§109조③1호
	산림보호구역,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109조③2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사용 건축물	§109조③3호
	비상재해구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109조③4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109조③5호
자동차세	국가 등이 소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126조1호
	국가 등이 환자수송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126조2호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126조3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145조①1호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145조①2호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	§145조②



- 범례: 취:취득세, 재:재산세, 도:도시지역분 등:등록면허세, 자:자동차세, 주:주민세, 지:지역자원시설세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농어업을 위한 지원	자경농민 농지 등	직접 경작 · 조성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	취 50	§6①
		창고 등 농업용 시설 취득	취 50	§6②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농지 등 취득	취 50	§6④
	농기계류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취 100	§7①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 재 100	§7②
	농지확대 개발	농지확대개발 시행관련 개간농지	취 100	§8①
		교환 분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외)	취 100	§8②
		임업후계자의 임야 교환 및 보전산지 취득 등	취 50, 100	§8③
	자영어민	직접 어업을 위한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등	취 50	§9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취, 재(도, 지) 100	§9②
		출원에 의한 어업권, 양식업권	취 100	§9③
	농어업인등 융자관련	조합이 농어업인 등에 융자할 경우 담보물 등기	등 50	§10①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 100	§10②
	농업법인	농업법인 설립등기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청년농업법인 4년)	취 75	§11①
		농업법인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50	§11②
	어업법인	어업법인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50	§12①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 · 20조, 「농지법」 제11 · 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 30	§13②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 ·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취 50, 재 75	§13②①의2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농어업을 위한 지원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제1항에 따라 취득 (환매로 취득 포함)하는 부동산	취 50 (환매 100)	§13②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 · 소유하는 농지	취 50	§13②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 30	§13②5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부속토지와 공공시설 용지	재(도) 100	§13③
	농협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 · 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25	§14①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도) 100	§14③
	농협경제 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 · 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25	§14의3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교육훈련 시설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50	§15①
		지방농수산물공사 유통사업 등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도) 100	§15②
	농어촌 주택개량	주택개량대상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	취 100 (280만원 한)	§16
사회복지지를 위한 지원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하는 자동차	취, 자 100	§17-①,②
	한센인 등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에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축사용 부동산, 재활 직접사용 부동산	취, 재(도), 지 100	§17의2①,②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25	§18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도) 100	§19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관계 없이 사업 주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도) 100	§19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한 취득 및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 재(도) 100	§19의2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 시설 부동산	취 100, 재 50	§20①1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 직접 사용 부동산 (경로당)	재(도), 지 100	§20①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 시설 부동산	취,재 25	§20①2
	청소년 단체 등	스카우트주관 단체 등 고유목적 직접 사용 부동산	취 75, 재 100	§21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해 설치, 직접 사용 부동산	취 100, 재 50	§21②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법인’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100	§22①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입소자 및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취 25 (100)	§22①2
		‘사회복지법인’이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수익사업 및 유료제외)	재(도), 지 100	§22③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부동산 (입소자 및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재 25 (100)	§22③2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면허 / 사회 복지법인 등(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포함) 해당법인	등, 주 100	§22⑤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	지 100	§22⑥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등, 주 100	§22⑦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감염전문 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30, 재 50	§22⑧
	출산 양육 지원	18세미만의 자녀 3명/2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 100/50 (140/70만원 한)	§22의2①,②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50, 재 25	§22의4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권익 증진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25	§23①,②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100	§2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지진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하는 부동산	취 25	§27①
		근로 복지공단 이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감염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재 50	§27②
	산업인력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25	§28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25	§28③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85㎡이하 등 부동산	취 100	§29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 면허 / 해당 단체	취, 재(도) 100 등, 주 100	§29②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 부동산	취, 재(도), 지 100	§29③
		국가유공자 보철용·생활활동용 자동차	취, 자 100	§29④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재활교육 등 업무에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25	§30①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감염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재 50	§30②
		독립기념관 업무에 직접 취득·사용 부동산 및 해당 법인	취, 재(도), 주 100	§30③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 100	§31①1
		공공 주택사업자가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 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추가 토지,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 50	§31①2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형기숙사,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 을 취득하는 경우	취 100	§31②1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 50	§31②2
		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 /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 택, 및 건축중인 토지	재(도) 100	§31④1
		임대형기숙사 /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 주택 또는 오피스텔, 및 건축 중인 토지	재(도) 50	§31④2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및 건축중인 토지	재 25	§31④3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사업 목적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매입 공급 하는 주택 및 건축물	취 25, 재 50	§31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공급받은자 포함)	재 25 (3년)	§31⑧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토지 취득	취 100	§31의3①1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10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 ㎡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건축 하여 취득하는 경우, 추가 토지,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 50	§31의3①2
		임대사업자가 임대형기숙사,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 100	§31의3②1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및 추가 취득하는 경우	취 100	§31의3②2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40㎡이하)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건축중인 토지	재 100	§31의3④1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40㎡초과~ 60㎡이하)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건축중인 토지	재 75	§31의3④2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사회복지지를 위한 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60㎡초과 ~ 85㎡이하)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건축중인 토지	재 50	§31의3④3
	공공주택 사업자 임대목적 주택	공동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 15	§31의5①
		상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최초 취득하는 경우	취 15	§31의5②
	소규모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 재 25	§32①
	주택공급확대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 100	§33②
	지방 준공 후 미분양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 25	§33의3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운영 위원회가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등 50	§35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 25	§35②
	노후생활 안정자금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재 100	§35의2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 100	§36
		상기 부동산 중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도) 100	§36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거래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 100 (200만원 한)	§36의3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도시형 생활 주택 ·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3억원(수도권 6억원)이하	취 100 (300만원 한)	§36의3
	전세사기피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 주택	취 100 (200만원 한)	§36의4①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유하는 전세사기피해 주택(60㎡ 이하)	재 50	§36의4②1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전세사기피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유하는 전세사기피해 주택(60㎡ 초과)	재 25	§36의4②2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 100	§36의4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취 50	§36의4④
	출산 양육 지원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	취 100 (500만원 한)	§36의5①
	국립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이 그 고유업무에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염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재 50	§37①
	의료법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위해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감염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30, 재 50	§38①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직접 사용목적의 취득·사용 부동산 (감염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30, 재 50	§38④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부동산, 의료업에 직접 사용부동산 (감염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재(도) 75	§38의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50	§40
	대한적십자	대한적십자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감염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재 50	§40의3
		대한적십자가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50	§40의3
교육 및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지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도), 지 100	§41①,②
		학교등 직접 사용 면허. 해당 학교	등, 주 100	§41③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 100	§41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학교	등, 주 100	§41⑤
		의과대학 부속병원 (감염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추가 10% 경감)	취 30, 재 50	§41⑦
		지방대학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취, 재 50	§41⑧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교육 및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지원	기숙사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주 100	§42①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 항공기, 선박 등	취, 재 100	§42②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75	§42③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단체 해당 사업에 사용 부동산	취, 재(5년) 50	§43③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5년) 50	§44①2
		전공대학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도), 지, 등, 주 100	§44②
		산학협력단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75	§44③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50	§44④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취, 재(도), 지, 등, 주 100	§44조⑤
	박물관 등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100	§44의2
	학술단체 및 연구법인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100	§45①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100	§45②1
		장학법인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사용하는 임대용 부동산	취, 재 80	§45②2
	기초과학연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100	§45의2
	기업부설 연구소	중 소 기 업 의 기 업 부 설 연 구 소 - 수 도 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각각 추가 15% 경감)	취, 재 45	§46①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부설연구소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제외	취, 재 35	§46①2
		그 밖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각각 추가 15% 경감)	취, 재 30	§46①3
		상기의 경우 중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등 연구	각각 추가 15	§46②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가능자원물류시설 및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등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25	§47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교육 및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지원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기준이상인 경우	취(0.03~0.1)	§47의2①1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이 기준이상인 경우	취(0.03~0.1)	§47의2①2
		신축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취(0.15~0.2)	§47의2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 10	§47의2③
	내진성능	법령상 비의무대상인 민간 건축물에 대해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 재(2년) 100 재(3년) 50	§47의4①
	확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취(0.05~0.1)	§47의4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법령상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 25	§47의5①
	스프링 쿨러설비	법령상 비의무대상인 숙박시설에 대해 설치하는 스프링쿨러설비등	취, 재(2년) 100 재(3년) 50	§47의6
	국립공원관리	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사업을 위한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25	§48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업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선박	취, 재 25	§49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종교단체 및 향교	종교단체 및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도), 지 100	§50①,②
		종교단체 및 향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및 사업소	등, 주 100	§50③
		종교단체 및 향교에 무료로 전력을 제공하는 경우	지 100	§50④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재(도) 100	§50⑤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 교회, 불당 등	주 100	§50⑥
	신문·통신사업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주 50	§51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100	§52①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100	§52②
	체육진흥기관	대한체육회 등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 예술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50	§52의2
	사회단체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한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 100	§53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관광단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30% 추가 경감)	취 10	§54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재(도) 100	§55①
		문화재로 지정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 50	§55②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 50	§55②2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기업 합병·분할	중소기업 간,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 60	§57의2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취 100, 등 50	§57의2②1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취 100, 등 50	§57의2②2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취 100, 등 50	§57의2②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분할취득 재산	취 50	§57의2③2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	취 50	§57의2③3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 50	§57의2③5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 100	§57의2③7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 75	§57의2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취 100	§57의2⑤1
		금융기관이 법인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취 100	§57의2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 취득	취 100	§57의2⑤3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취 100	§57의2⑤4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기업 합병·분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취 100	§57의2⑤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취 100	§57의2⑤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취 100	§57의2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 취득	취 100	§57의2⑤8
		사업재편기업 법인 등기	등 50	§57의2⑧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회사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	취, 등 50	§57의2⑩
	기업 재무구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 100	§57의3①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 100	§57의3①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 100	§57의3①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 100	§57의3①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 100	§57의3①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취 100	§57의3①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위한 재산의 매입	취 100	§57의3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취득	취 50	§57의3③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기업 재무구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 그 자산 취득	취 100	§57의3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 자산	재(5년) 50	§57의3⑤
	주거안정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연체자의 주택	취, 재 50	§57의4
	PFV사업 정상화 지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기존 부실PFV사업장의 부동산	취 50	§57의5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 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 35	§58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 50	§58②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3년) 50	§58③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특정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각각 추가 15% 경감)	취 35, 재 20	§58④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증축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분양, 임대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각각 추가 20% 경감)	취, 재(5년) 15	§58의2①
		(입주자) 지식산업센터를 증축,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5년) 35	§58의2②
	창업중소 기업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 75	§58의3①1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재(2년) 100 재(3년) 50	§58의3①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 75	§58의3②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재(2년) 100 재(3년) 50	§58의3②2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 50	§60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 75	§60①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 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비수도권 재산세 추가 10% 경감)	취, 재 50	§60③1
		학교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취 75, 재(도) 100	§60③1의2
		특별시장 등이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산업기술, 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 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사용부동산	취, 재 50	§60④
	광업지원	광업권의 설정·이전·변경 면허	등 100	§62①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철도시설 등	국가철도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 25	§63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차량 및 부동산	취, 재(도) 100	§63②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50	§63③1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철도차량	취 50 (고속철도 25)	§63③2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분할등기	취, 등 100	§63④
	철도시설 등	도시철도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철도 차량,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등기, 직접 사용 부동산	취, 재(도), 등 100	§63⑤
		SR의 직접사용 고속 철도차량	취 25	§63⑥
	해운항만 등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등록된 선박	취(세율0.02) 재 50	§64①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	취(세율0.01) 재 50	§64-②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 (1등급 0.02 2등급 0.015 3등급 0.01 세율 경감)	취(등급별)	§64-④
	항공운송사업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용 항공기	취(세율0.012) 재(5년간) 50	§65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교환자동차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동일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취 100	§66①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재등록	등 100	§66②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취 100 (140만원 한)	§66④,⑤
		수소전기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취 50	§66⑥
	경형자동차	비영업용 경형자동차	취 100 (75만원 한)	§67①
		경형승합자동차 · 경형화물자동차	취 100	§67②
		승차 정원 7명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2008년 이전 신규 차량 한정)	자 (소형일반 버스 세율)	§67③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취, 자 100	§68①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	취(세율0.02)	§68③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취 100	§68③
	교통안전 등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용 및 자동차검사소용 취득 부동산	취 25	§69
	운송사업 지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 50	§70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 · 수소버스	취 100	§70④
	물류단지	(시행자)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취득세 10%, 재산세 10% 추가 경감)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25%, 재산세 20% 추가 경감)	취 25, 재 15	§71①
		(입주기업)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취득세 15%, 재산세 10% 추가 경감)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35%, 재산세 25% 추가 경감)	취 35, 재(5년) 25	§71②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행사)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직접 사용 포함)	취 15	§71의2①
		(입주기업)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취 40	§71의2②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세율0.02)	§72①
		별정우체국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부동산	재(도), 주 100	§72②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취 100	§73①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 100	§73③
	기부채납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부동산 무상 양여받거나 무상 사용권 제공받는 부동산 등	취 50	§73의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 75	§74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주택, 체비지 또는 보류지 / 부동산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취 75 / 100	§74-④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 50	§74⑤1,2
		재개발사업 원조합원이 1가구 1주택 취득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취 75 / 50	§74⑤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	취 100	§74의2①
		복합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 /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	취 100 / 50	§74의2③1
		복합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취 50	§74의2③2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1가구 1주택 취득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취 75 / 50	§74의2③3
	기업도시 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취, 재 (50% 범위내 조례)	§75조의2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위기지역	고용 위기지역, 고용 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내 기존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 기업	취, 재(5년) 50	§75조의3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 100	§75조의4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 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취, 재(5년) 100 재(3년) 50	§75조의5①
	인구감소지역	무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속관심지역에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제외 인구감소지역 소재 12억원 이하)	취 25 (75만원 한)	§75조의5④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 50	§75조의5⑦
	빈집의 정비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내에 신축하는 주택 및 건축물	취 25 (75만원 한)	§75조의6①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	재(도)(5년) 100	§75조의6③
	택지개발용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 조성사업지구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부속토지 및 공공시설용지 / 무상 양여,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경우	재 100 / 50	§76②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부속토지 및 공공시설용지 / 무상 양여, 무상 사용권을 제공 받는 경우	재 100 / 50	§77②
	산업단지	(시행자)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조성공사가 시행중인 토지-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취득세 20%, 재산세 35% 추가 경감)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35%, 재산세 45% 추가 경감)	취, 재 15	§78①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	(시행자) 분양 또는 임대 목적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취득세 20%, 재산세 35% 추가 경감)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35%, 재산세 45% 추가 경감)	취, 재(5년) 15	§78㉓1,2
		(시행자) 직접사용 목적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취득세 20%, 재산세 35% 추가 경감)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35%, 재산세 45% 추가 경감)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비수도권 취득세 15%, 재산세 25% 추가 경감)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 재산세 40% 추가 경감)	취, 재(5년) 15 취, 재(5년) 35	§78㉔1,2 §78㉕2 가,나
		(입주기업)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취 25	§78㉕2다
	한국산업 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취득하는 부동산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그 외의 지역 취득세 10%, 재산세 25% 추가 경감)	취, 재 25	§78조의2
	법인의 지방이전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5년) 100, 재(3년) 50	§79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 100	§79②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 재(5년) 100	§79의2
	공장의 지방이전	공장을 영위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사업을 계속 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5년) 100 재(3년) 50	§80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취 50, 재(2년) 100, 재(2년) 50	§80의2①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외의 기회 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취 50, 재(5년) 100	§80의2②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수도권 (그 외의 지역 재산세 40% 추가 경감)	취 50, 재(5년) 35	§80의2③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5년) 50	§81①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	등 100	§81②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이전지역에서	취 100 / 75 / 62.5	§81③2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전용 면적 85㎡ 이하/ 102㎡ 이하/135㎡ 이하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102㎡ 이하/135㎡ 이하	취 100 / 75 / 62.5	§81의2
	개발제한 구역내 주택개량 시장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개량하는 100㎡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재(5년) 100	§82
		시장정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 50	§83①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행 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 정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 제외)	취 100 재(5년) 50	§83②
	사권제한토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등	재(도) 50	§84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후 미집행된 토지	재 50	§84②
		철도안전법에 다른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 50	§84④
공공행정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25	§85①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 50	§85의2①1,3
		택지개발·단지조성사업지구내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용 부동산으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물 등 / 무상 양여, 무상 사용권을 제공 받는 경우	재 100 / 50	§85의2①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하는 부동산	취, 재 100	§85의2②

분야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공공행정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취, 재 50	§85의2③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100	§87①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복지사업, 조합원 공제사업, 조합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100	§87①2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가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100	§87②1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가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100	§87②2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 100	§88-①
	정당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 재(도), 지 100	§89①,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정당	취, 재(도), 지, 주 100	§89③
	마을회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	취, 재(도), 지 100	§90①②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 등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 선박 건조 또는 종류 변경,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 대체 취득	취 100	§92①
		천재지변 등으로 말소등기(등록)과 복구를 위한 건축 허가 면허	등 100	§92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	주, 자, 재, 지 100	§92⑤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상기 감면 세목 포함)	취 100	§92⑤2
	자동이체 등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 세액 공제	개별 조례	§92의2①

03

조례에 따른 감면 등



● 범례: 취:취득세, 등:등록면허세, 자:자동차세, 주:주민세(개인분)

분야	조문제목	감면내용	감면율	해당조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조정	취(세율 30%)	§4②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 (舊 시각장애 4급 해당)의 보철용 · 생활활동용자동차	취, 자 100	§2①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로 사용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 50	§4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승용자동차	자 5	§5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신성장동력사업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취 (10년) 100 (3년) 50	§6①②1 전단
		상기의 사업	취 (15년) 100	§6①②1 후단
		신성장동력산업의 사업양수	취 (7년) 50 (3년) 30	§6①②2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산업용 건축물 신축 등 취득세 추가 경감 / 대수선의 경우	취 25 / 15	§6외2
	시장현대화 사업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 100	§7
	사회적취약 계층	차상위 계층, 80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의상자(유족포함) 세대주	주 100	§8
	도서지역 발전시설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	취 100	§11
	자동이체등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 세액 공제	개별 800원 모두 1,600원	§12

※ 군 · 구세는 인천광역시 각 군 · 구 감면 조례 참고(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15%(85% 감면율 적용)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이나 자연어민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이 취약계층이나 대체 취득 등과 같은 형식적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면 내용		해당조문	세목		적용 시기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4	노동조합	§26	○	○	
5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②1,④1	○	○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	○	'16.1.1.
7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8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 과학관	§44의2	○	○	
9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0	문화예술단체 · 체육진흥단체	§52①	○	○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		
12	경차	§67②	○		
13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택 (85㎡이하)	§81③2	○		
14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갯생보호시설	§85①	○	○	
16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21년까지 적용)	§47의4①2	○	○	'17.1.1.
17	국제선박	§64①,②,③	○		
18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19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		
20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21년까지 적용)	§13②1의2호		○	'18.1.1.
21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	○	
22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의2	○	○	
23	신협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	○	
24	지역아동센터	§19의2	○	○	

	감면 내용	해당조문	세목		적용 시기
			취	재	
25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의3		○	'18.1.1.
26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의2	○		'19.1.1.
27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42②	○	○	
28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	○	○	
29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의2③7	○		
30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의2⑤	○		
31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③1의2호		○	
32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부터취득주택(85㎡ ↓)	§74④3	○		
33	법인의 지방이전	§79①	○	○	
34	공장의 지방이전	§80①	○	○	
35	시장정비사업(임주상인)	§83②	○		
36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의2	○		
37	사회복지법인	§22①,②	○	○	'20.1.1.
38	별정우체국	§72②		○	
39	지방공단	§85의2②	○	○	
40	새마을운동조직	§88①	○	○	
41	정당	§89	○	○	
42	마을회	§90	○	○	
43	수소·전기버스	§70④	○		
44	장학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45②1	○	○	
45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조특법 적용대상은 제외)	§78의3	○	○	'20.7.10.
46	생애 최초 주택	§36의3①1	○		
47	전공대학('23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44②	○	○	'21.1.1. ~ '22.12.31.
48	농협 등 조합간 합병	§57의2②	○		'21.1.1.
49	농협·수협조합의 부실조합 재산 양수 등	§57의3①	○		'22.1.1.
5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57의3④	○		
51	한국자유총연맹	§88②	○	○	
52	반환공여구역내 창업용 부동산	§75의4	○		'23.1.1.
53	인구감소지역내 창업용 부동산	§75의5	○	○	
54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취득	§47의4①	○		'25.1.1.
55	지방농수산물공사	§15②	○	○	'26.1.1.
56	도시철도공사	§63⑤	○	○	'2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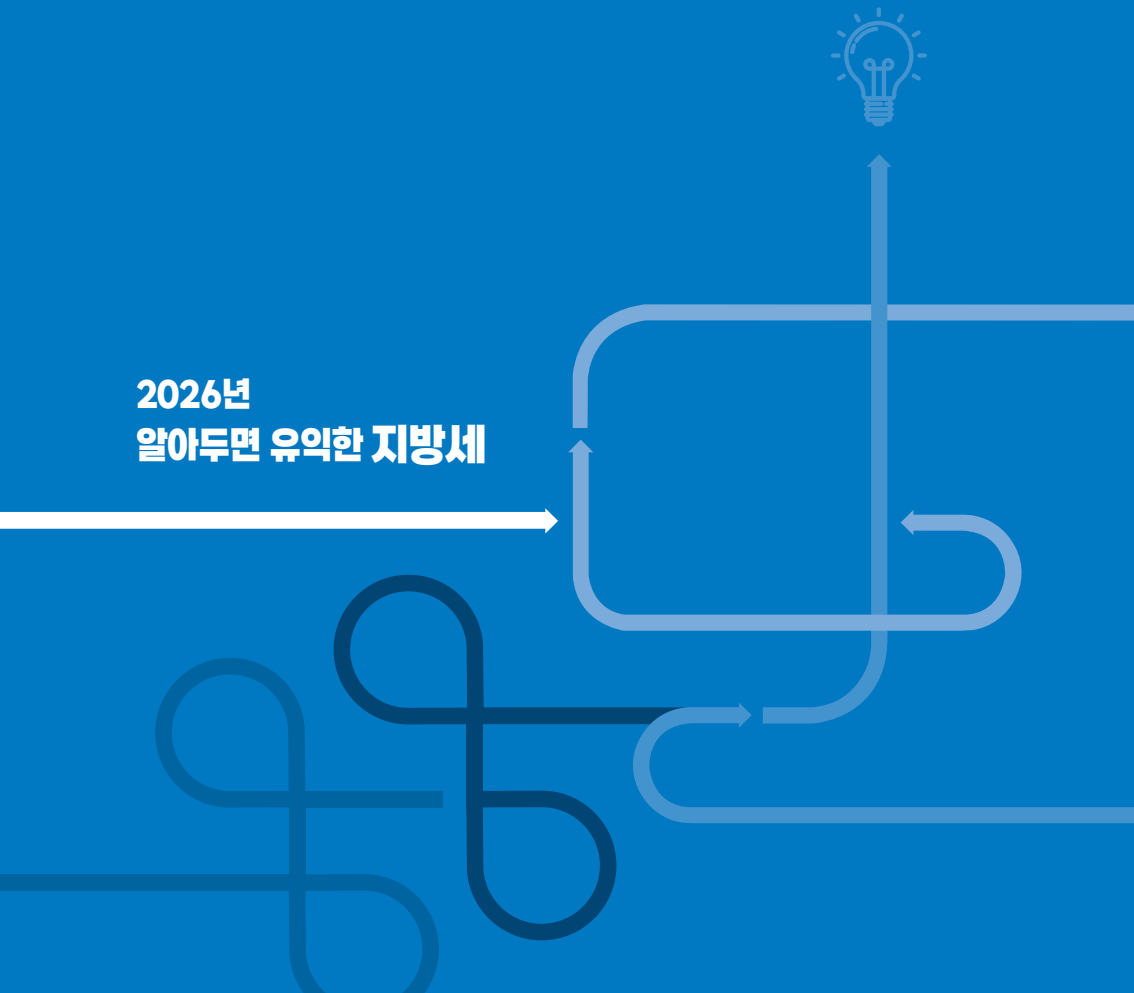
V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1. 지방세 구제제도	81
2. 납세자보호관 제도	84
3.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91
4. 마을세무사 제도	94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01

지방세 구제제도



1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2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지방세 구제

구 분		심리·의결	결정
과세 前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시세 : 시장 군·구세 : 군수·구청장
과세 後	이의신청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시세 : 시장 군·구세 : 군수·구청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
	심사청구(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행정소송	판사	판사

* 사유 : ① 각하결정사유 해당, ② 청구금액 1백만원 이하로서 유사 인용결정사례가 있는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1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제88조)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함

2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제90조)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명서류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시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군·구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군·구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군·구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포함]의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③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후 처분기간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④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등)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

⑤ 행정소송(「지방세기본법」 제98조)

-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의 관계(「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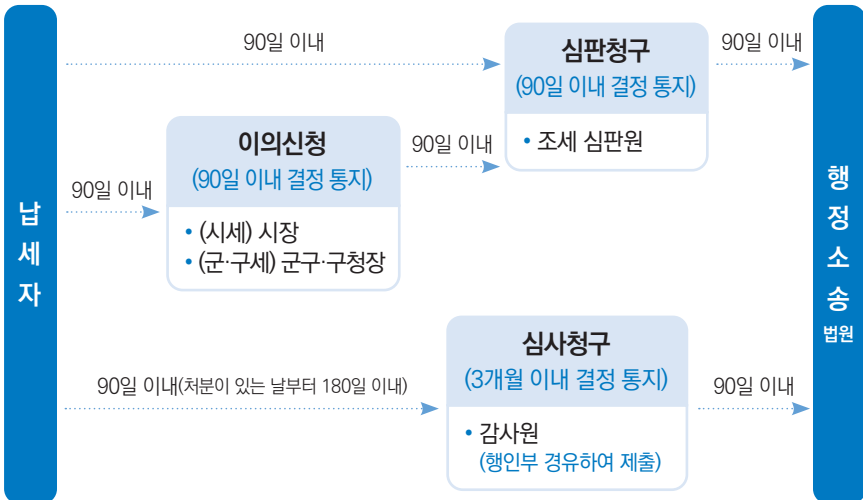
-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함.

3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사전 구제절차(부과처분 전)



사후 구제절차(부과처분 후)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도입과 함께 시·도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02

납세자보호관 제도



1 개요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및 권한

- (역할) 고충민원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 ④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구 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 용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출되는 민원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군·구는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군·구는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의 현장 조사 및 7일의 추가 연장 가능)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의 현장 조사 및 7일의 추가 연장 가능)

2

고충민원 신청

● 고충민원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대상에 포함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대상에 포함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고충민원의 처리 구분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군·구 납세자보호관
①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① 군수·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②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군·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③ 군·구세 관련 군·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재심청구)	③ 그 밖에 군수·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군·구는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3

권리보호요청

● 권리보호요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권리보호를 요청

● 요청대상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 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징수의 처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군·구는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

● 세무조사 기간 연장

-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연장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I 시민의 바람, 인천의 새바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 연장기간 : 20일 이내

※다 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승인”또는“불승인”처리

5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결정

● 세무조사 연기

• 납세자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천재지변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승인”또는“불승인”처리
-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 가능

6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업무범위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기한 연장

- 기한의 연장신청 및 결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가산세 감면신청

- 가산세 감면신청 및 결정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징수유예 등의 신청

- 징수유예 등 신청 및 결정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시로 이관된 시세 체납의 경우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와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7

납세자 보호관 연락처

자치단체	부서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	032) 440-2206	032) 440-8634
강 화 군	감사법무담당관	032) 930-3401	032) 930-3644
웅 진 군	기획감사실	032) 899-2764	032) 899-2039
제 물 포 구	기획감사실	032) 770-6932	032) 770-6059
영 종 구	법무감사실	032) 760-7077	032) 760-7069
미 추 흥 구	감사실	032) 880-5971	032) 880-4859
연 수 구	감사실	032) 749-7132	032) 749-7049
남 동 구	감사실	032) 453-2161	032) 453-2079
부 평 구	기획예산과	032) 509-6096	032) 509-7604
계 양 구	기획예산실	032) 450-5053	032) 551-5713
서 해 구	정책기획과	032) 560-4063	032) 560-2743
검 단 구	기획예산실	032) 726-6152	032) 560-2722

● 신청(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6)에게 문의



1 개요

● 도입 배경

- 국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 시 영세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4.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형평성 결여
- 이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2020.3.2.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3조 및 제34조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및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서, 다만 고액·상습채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되며,
-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선정을 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복업무를 대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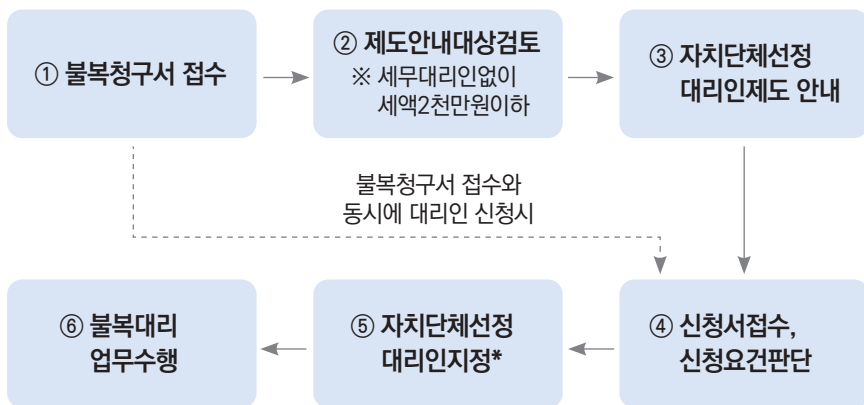
2 선정 대리인 제도

●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무료로 대리

구 분	내 용	
신청요건	청구 · 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 · 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 · 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 · 관리	시장	· 대리인 통합 위촉 · 관리, 시, 군 · 구 대리인 지정
	군수 · 구청장	·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국선대리인과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주요내용 비교〉

구분	국선대리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신청대상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이의신청인
신청세액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적용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법인) 수입금액(매출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골프 · 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 · 출자지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적용제외 세목	상속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 · 지방소비세, 레저세

04

마을세무사 제도



1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이웃 세무사

2 제도 안내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
※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방법

- 120미추홀콜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군·구 홈페이지를 이용 마을세무사 확인
-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 추가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 방문 상담 가능

● 문 의



120 공공할 댐 언제나~
미추홀콜센터

☎ (032) 120

담당기관	담당지역(읍면동)	성명	전화번호
강화군	강화읍,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이재봉	032-933-3205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이기흥	032-933-3941
옹진군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남준일	032-887-6980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이중희	032-466-6103
제물포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개항동, 도원동, 울목동, 동인천동	이경원	032-713-9077
	만석동, 화수1·화평동, 송림4동, 송림6동	이수진	032-821-1291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4동, 송림6동	김현재	032-567-5575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금창동	김창수	032-832-3060
영종구	영종동, 영종1동, 영종2동, 운서1동, 운서2동, 용유동	박기영	032-202-2990
	영종동, 영종1동, 영종2동, 운서1동, 운서2동, 용유동	장건하	032-715-7331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5동	고재성	032-777-2777
	학익1동, 학익2동, 도화1동	유광수	032-223-7870
	용현2동, 용현3동, 용현1·4동	민상원	032-463-3120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6동, 주안7동	유명석	032-864-9922
	주안4동, 주안5동, 주안8동	김주택	032-423-4000
	관교동, 문학동, 도화2·3동	김태웅	032-882-0055
연수구	옥련1동, 옥련2동, 청학동	박문식	032-831-3471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이재동	032-715-7654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이승록	032-816-1230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최종국	032-207-1771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이세웅	032-811-5755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이태훈	032-834-0089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고봉성	032-832-1909
남동구	구월1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설희근	032-429-9301
	구월1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정용은	032-859-0161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홍주상	032-719-2117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김성훈	032-710-3858
	구월3동, 남촌도림동	이병덕	032-715-7160

담당기관	담당지역(읍면동)	성명	전화번호
남동구	구월4동, 만수5동, 만수6동	오진수	032-422-1505
	서창2동, 논현1동, 논현2동	권혁만	032-464-3040
	장수서창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김현택	032-427-3232
	장수서창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손영철	032-858-0606
부평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김소정	032-425-1729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박종렬	032-552-4955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홍혜인	032-278-8200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박혜민	032-502-2613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최호성	032-710-5910
	청천1동, 청천2동	이재관	032-202-7728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김도현	032-423-3399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김용학	032-888-8909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한정수	032-529-905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이명중	032-505-8300
계양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임정완	032-551-3311
	효성1동, 효성2동	김정현	032-549-0550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김윤경	02-2631-8890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김천수	032-556-6699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권관중	032-710-3004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김광래	032-569-0293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김광래	032-569-0293
서해구	검암경서동	황유진	010-4577-3972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연희동	이흥현	032-569-0200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강명길	032-563-7692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김주현	032-713-9873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가순태	070-4048-2282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김한수	032-566-9338
검단구	볼로대곡동, 원당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당하동	임병호	032-565-3343
	볼로대곡동, 원당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당하동	신현찬	032-427-0114
	볼로대곡동, 원당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당하동	김현수	032-721-7026
	검단동, 오류왕길동	김길수	032-721-4993



VI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1. 지방세 납부방법	99
2. 지방세 납부매체	102
3.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 혜택	104
4. 디지털 지방세 홍보	105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지방세 납부방법

- 방문 납부 : 금융기관, CD/ATM기, 군 · 구청 세무부서
- 전화 납부 : 폰뱅킹(ARS) ☎142-21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납부, 간편결제
-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

※ 인천시 지방세 안내 알림서비스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채널 추가

구분	주요내용	이용시간
방문 납부	• 세무부서 방문 납부	근무시간 09:00~18:00
	• 은행 창구 납부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은행영업시간 09:00~16:00(평일)
	• CD/ATM 납부 -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 본인, 타인세금(전자납부번호) 모두 가능	CD/ATM 영업시간 (은행별 상이함)
전화 납부	• ARS 이용 납부 (☎142-211) - 음성 ARS : 신용카드 - 보이는 ARS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본인인증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타인납부 가능 - 법인은 납부 불가	07:00~23:30(연중)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금결원), 위택스(행안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본인, 타인세금(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간편번호) 납부 가능 - 포인트사용, 할부수수료는 카드사마다 상이 확인 필요	00:30~23:30(연중) (은행별 상이함)
	• 가상계좌(7개 은행) 납부 - 신한, 농협, 기업, 우리, 하나, 국민, 수협	00:30~22:00(연중)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00:30~23:30 (은행별 상이함)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 지방세 조회 · 납부, 환급금 조회 · 신청, 전자납부번호 납부, 납부 확인 등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00:30~23:30(연중) (은행별 상이함)
	• 금융앱 - 금융기관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 간편결제 -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	

1 방문납부(금융기관, 군·구 세무부서)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쉽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및 국내발생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가능 ※ 다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됨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납부 가능

[CD/ATM 납부]

카드·통장투입 ▶ 지방세 선택 ▶ 납부 선택(현금-본인, 현금-타인, 신용-본인, 신용-타인) ▶ 비밀번호입력 ▶ 고지내역 조회 ▶ 납부할 내역확인, 납부건 선택 ▶ 납부, 영수증 출력

2 전화이용 납부(지방세·세외수입 ARS)

- 개요 : 전화한통으로 간편하게 인천시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 ☎ ARS 전화 : 142-211
- 납부방법 : 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 음성ARS : 신용카드 납부
 - 보이는 ARS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이용시간 : 07:00 ~ 23:30 납부 가능
 - ※ 본인인증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타인납부 가능
 - ※ 법인은 납부 불가

3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개요 : 인터넷으로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조회, 질의답변 등 정보검색 가능한 지방세 포털 ☎ 사용문의 안내 : 110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전자신고 납부 이용시간 : 00:30 ~ 23:30

- ⇒ 전자신고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 전자납부
 - 지방세 :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을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납부
 - 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 전자신청 : 지방세 환급신청,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지방세 업무를 처리

●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 개요 : 전국 지방세를 인터넷 지로사이트 이용 납부 가능
- 이용방법 :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선택 → 시군·구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조회 → 납부
- 이용시간 : 00:30 ~ 23:30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4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 개요 :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전국 지방세를 납세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
- 「스마트 위택스」 설치 방법
 - ① 스마트폰(각 통신사) 모바일 앱 스토어 검색란에 '지방세 납부' 입력
 - ②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설치
 - ③ 회원가입(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 필요시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 공동인증서 이동서비스(smart.wetax.go.kr)' 이용

● 금융앱

- 개요 :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및 납부
- 참여기관 : 12개(금융결제원, 신한, 하나, 부산, 대구, 농협, 기업, 국민, 경남, 광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 간편결제

- 개요 :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및 납부
- 참여기관 :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

02

지방세 납부매체



1 가상계좌 납부

- 개요 : 과세기관에서 납세자에게 발급한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식
 -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 확인 (납세자별로 계좌번호 다름)
 - ※ 납세자와 입금자가 상이해도 입금처리됨
- 이용가능시간 : 00:30 ~ 22:00[365일 가능]
- 대상은행 : 신한, 농협, 기업, 우리, 하나, 수협, 국민

2 은행 납부(인터넷은행 포함)

- 개요 :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
- 대상은행 : 시중은행,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처리내용 : 시중은행 창구나 CD/ATM기,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 홈페이지 · 금융앱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

3 신용카드 납부

- 납부대상 : 신용카드 소지자
- 납부방법 : 위택스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은행 CD/ATM기

〈 지방세 · 세외수입을 앱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 앱스토어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앱카드 다운로드
- 위택스 지방세(PC, 스마트폰)에서 결제수단을 앱카드로 선택
- 앱카드 실행 후, 결제코드 또는 QR코드 선택입력
-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버튼 클릭

4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개요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처리방법 :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정책에 의거 처리되며,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 이용가능시간 : 00:30 ~ 23:30[365일 가능]

[처리 방법 :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구 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조회포인트, 사용가능 카드,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5 자동이체 납부

- 개요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출금(결제)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 계좌(출금통장) 소지자, 신용카드 소지자
- 신청방법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각 군·구청 세무과
- 신청세목 :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

- 대상카드 : 12개카드사(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농협, KB국민, 광주, 수협)
- ※ 사용(용도)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03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혜택



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 공제혜택

- 개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매년 6월·12월에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제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납공제율 : 4.58%

- 신청방법 : 군·구 세무부서 전화·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위택스)

2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 공제혜택

- 개요 :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고지서 1장당 아래와 같이 세액을 공제함

구분	공제액
•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중 어느 하나만 신청	800원
•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	1,600원

- 신청방법 : 군·구 세무부서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위택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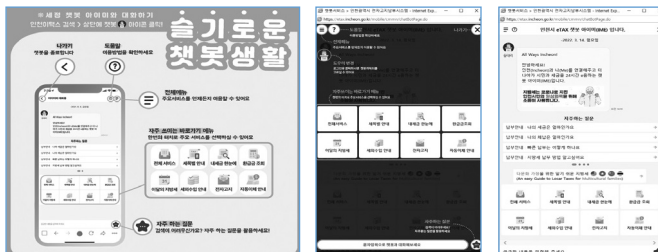
1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 개요 : 지방세 · 세외수입 정보,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납부방법, 법령개정 사항, 마을세무사 제도 등)
- 이용방법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검색 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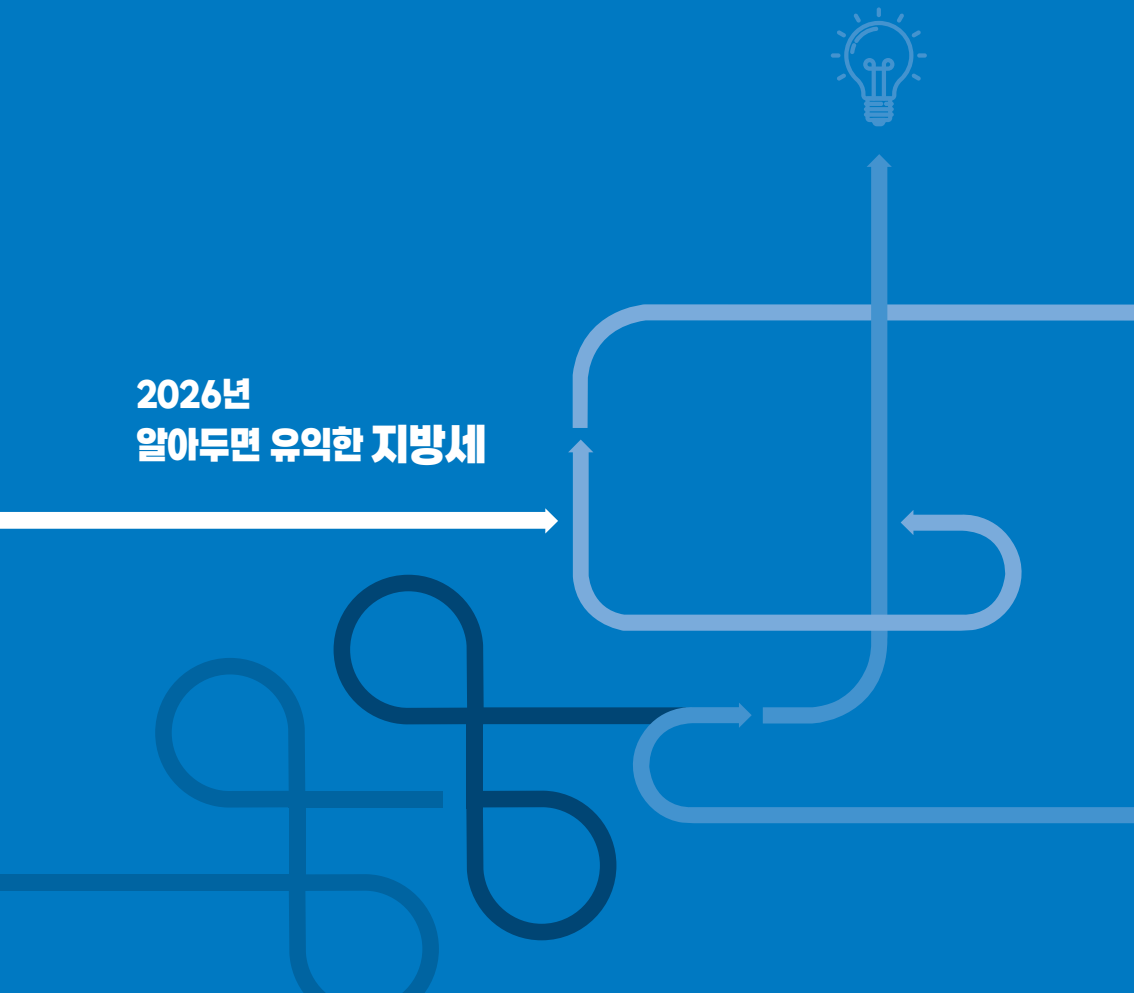


2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아이미(IME)”

- 개요 : 24시간 365일 비대면 인공지능(AI) 상담서비스
(지방세 안내 및 납부방법, 환급액 조회, 세외수입 등 정보)
※ 아이미(IME) : 인천(Incheon)과 나(ME)를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시민과 세금을 24시간 e음하는 챗봇
- 이용방법 : 인터넷에 “인천시 전자자기납부시스템” 검색 → “챗봇상담” 클릭 → 정보확인 및 상담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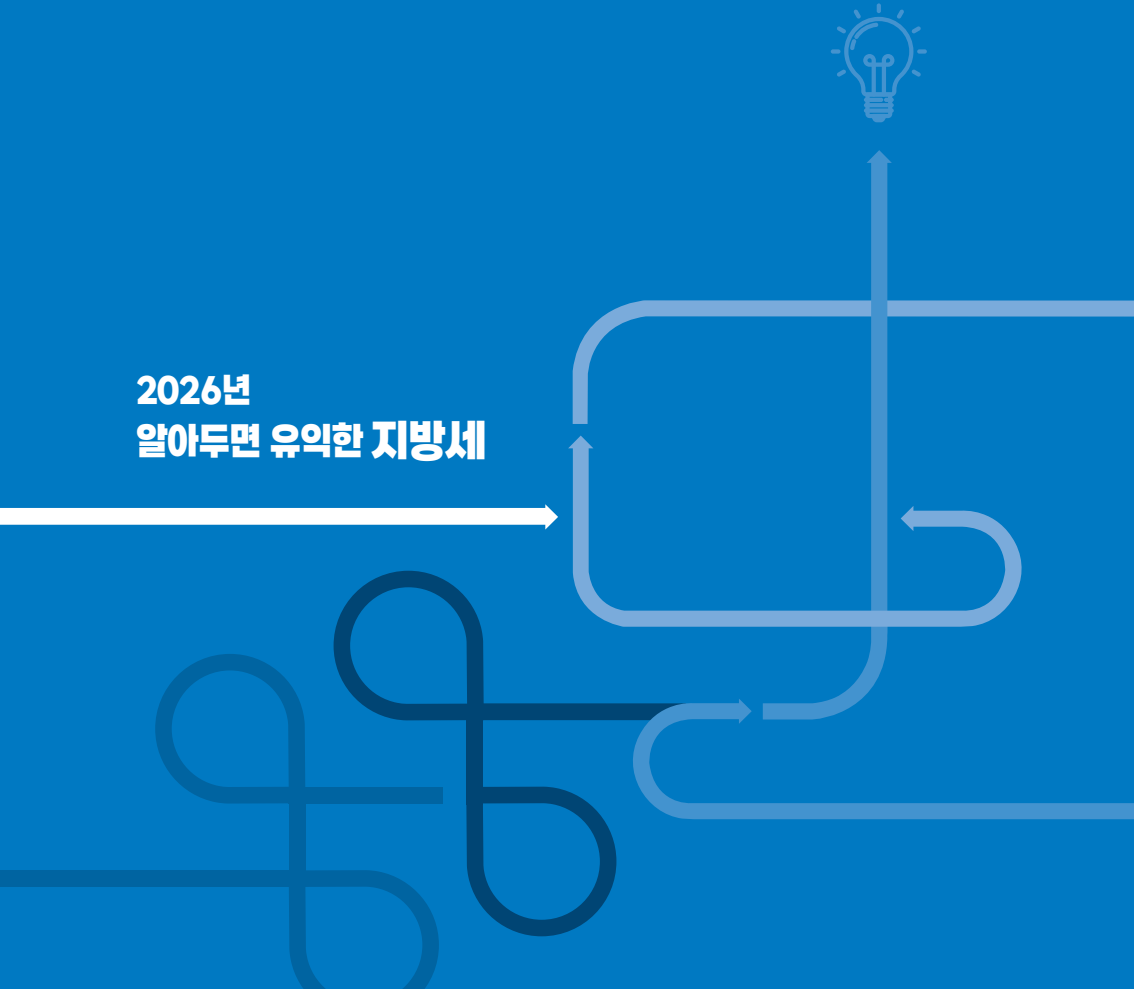
VII

기타 유용한 지방세 정보 등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	109
2.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112
3.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114
4. 지방세 체납시 제재 내용	116
5. 납세증명서의 제출	117
6. 국세 전화상담 및 세무서 안내	119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의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제도(「지방세기본법」 제49조)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후신고서(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체결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신고’라 함.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③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효과

-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당초 세액과 증액된 세액은 조세쟁송, 체납처분 등의 별개의 대상임).

2

경정청구 제도(「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신고서(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 함.

●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효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3

기한 후 신고 제도(「지방세기본법」 제51조)

● 의의 및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함.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효과

-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됨.

〈수정신고 ·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비교〉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효력	확정력 있음 (결정 · 경정 없음)	확정력 없음 (결정 · 경정 있음)	확정력 없음 (결정 · 경정 있음)
통지의무	없음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가산세의 감면	• 1개월이내:90% • 1개월초과~3개월이내:75% • 3개월초과~6개월이내:50% • 6개월초과~1년이내:30% • 1년초과~1년6개월이내:20% • 1년6개월초과~2년이내:10%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1개월이내:50% • 1개월초과~3개월이내:30% • 3개월초과~6개월이내:20%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02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1 기한연장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요건

-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

1.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 포함)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요건

-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풍수해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풍수해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징수유예 사유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

구 분	기 한 연 장	징 수 유 예
기 간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대 상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 신고납부기한전 : 가능 - 신고납부기한경과후 : 불가능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 납기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고지후 : 징수유예
효 과	가산세 배제	납부지연가산세 배제
담 보 제 도	있음(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03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1 분할납부 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4항, 제103조의23제4항, 제103조의37제5항, 제118조 및 제147조제2항

● 분할납부 대상 세목 및 금액

구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세액	• 납부세액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2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비고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개인(양도소득분) 및 특별징수분 제외	소방분 지역지원시설세 분할납부는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준용하여 적용

● 분할납부 신청 및 기한

-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신고)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3개월 이내 분할납부

● 분할납부 효과

-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2 물납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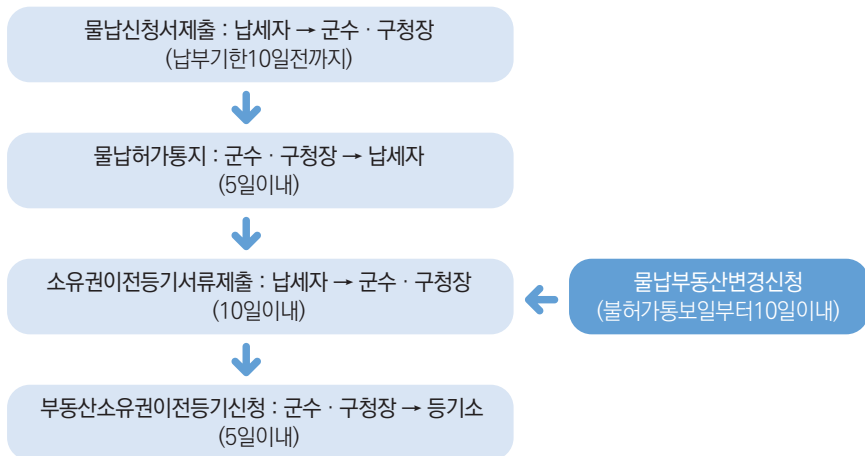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 물납 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물건 : 군·구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한함

● 물납 체계도



●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 토지 및 주택 : 공시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시가로 봄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 그 취득가격

04

지방세 체납시 제재 내용



지방세가 납부기한 이내에 완납되지 않고 체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지방세 체납시 제재의 종류

연번	제재의 내용	법적 근거
1	납부독촉(최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2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3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제107조
4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5	출국금지	「지방세징수법」 제8조
6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지방세징수법」 제9조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8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9	[자동차세 체납에 한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지방세법」 제131조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념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제25조의2 · 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 「지방세징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 「지방세징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 제출사유(「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임.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



●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전화 이용안내

-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일반통화요금 적용)
-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 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82 → 126

● 인천광역시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 안내

구분	관할	전화번호	주소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200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구월동)
인천세무서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옹진군	032-770-0200	인천시 동구 우각로 75 (창영동)
연수세무서	연수구	032-670-9200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남동세무서	남동구	032-460-5200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48 (구월동)
부평세무서	부평구	032-540-6200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47 (부평동)
계양세무서	계양구	032-459-8200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244 (작전동)
서인천세무서	서해구, 검단구	032-560-5200	인천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92 (청라동)
김포세무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031-980-3200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민원봉사실)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연락처 전화) 032-440-2540
FAX) 032-440-8702

참여자 재 정 기 획 관 김범수
세 정 담 당 관 백창열
세 정 담 당 김정구
주 무 관 오기우
세목별팀장 및 업무담당자

※ 본 책자는 안내·참고용으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 ◆ 구체적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바, 과세관청 및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